

碩士學位論文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 중·칠레 FTA, 한·칠레FTA를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趙 艷 霞

2009年 2 月

#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중·칠레 FTA, 한·칠레 FTA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李 庸 完

趙 艷 霞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2月

趙 艷 霞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委 員 \_\_\_\_\_ (인)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9年 2月

## <目 次>

제 I 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3
제3절 연구의 구성.....	4
제 II 장 중국과 한국의 원산지 결정기준.....	5
제1절 원산지규정 개념.....	5
1) 원산지규정의 개념.....	5
2) 원산지규정의 종류.....	8
3) 원산지 결정기준과 확인절차.....	10
4) 원산지 규정의 기능과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	16
제2절 중국과 한국의 기 체결 FTA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	20
1) 세계 주요 FTA 현황.....	20
2) 세계 주요 FTA 협정 원산지 규정 특징.....	21
3) 중국과 한국의 기 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규정 특징.....	21
제 III 장 중국·칠레, 한국·칠레 FTA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28
제1절 중국·칠레 FTA 원산지 결정기준.....	28
1) 완전 생산기준.....	31
2) 실질적 변형기준.....	33
3) 보조적 원산지 결정기준.....	36

제2절 한국·칠레 FTA 원산지 결정기준.....	42
1) 완전 생산기준.....	43
2) 실질적 변형기준.....	44
3) 보조적 원산지 결정기준.....	47
제3절 양국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	50
1) 완전생산기준 비교·분석.....	51
2) 실질적 변형기준 비교·분석.....	57
3) 보조적 원산지기준 비교·분석.....	66
제IV장 중·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정책적 함의.....	68
제1절 중·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정책적 방향.....	68
제2절 중·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틀(FRAMEWOR).....	69
1) 완전생산기준.....	69
2) 실질적 변형기준.....	71
제 V장 결론.....	87
참고문헌.....	89
영문요약.....	92

## <표 차례>

[표2-1 ] 원산지 세부기준별 특징과 주요 장단점.....	14
[표2-2 ] 중국과 한국의 FTA 추진현황.....	22
[표2-3 ] 중국 기 체결 FTA 원산지 결정기준 내용.....	24
[표2-4 ] 한국 기 체결 FTA 원산지 결정기준 내용.....	27
[표3-1 ] 중·칠레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내용 .....	30
[표3-2 ] 완전하게 획득한 상품.....	32
[표3-3 ] 「중국·칠레 FTA협정」 세번변경기준 .....	33
[표3-4 ] 중국·칠레 FTA의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한 HS 품목.....	35
[표3-5 ] 불인정공정 기준.....	39
[표3-6 ] 「중국·칠레 FTA협정」 원산지 규정 결정특례.....	41
[표3-7 ] 한국·칠레 FTA원산지 규정의 내용.....	42
[표3-8 ] 완전 생산기준.....	43
[표3-9 ] 한·칠레 FTA 협정의 세번변경기준에 적용된 품목.....	45
[표3-10] 한국·칠레 FTA 미소기준.....	48
[표3-11]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	50
[표3-12] 양국 완전생산기준의 유사점.....	52
[표3-13] 양국 완전생산기준의 차이점.....	53
[표3-14] 완전생산품 인정기준.....	55
[표3-15] 실질적 변형기준의 비교.....	58
[표3-16] 중·한 기 체결 FTA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제1-14류 품목).....	60
[표3-17] 중국과 한국의 주요 경제 및 농업지표(2002년).....	61
[표3-18] 중·한 기 체결 FTA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제50-63류 품목).....	63
[표3-19] 중·한 기 체결 FTA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제84-85류품목).....	65
[표3-20] 중·한 기 체결 FTA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제86-89류 품목).....	66
[표4-1 ] 중·한 FTA 완전생산기준의 틀(FRAMEWOR.....	70
[표4-2 ] 중국 주요 농업 생산물의 세계 순위.....	72

[표4-3 ] 0201 쇄고기 원산지 결정기준·····	73
[표4-4 ] 중국 제조업 성장률 세계 순위·····	74
[표4-5 ] 중국과 한국의 특화구조 전망과 경쟁력·····	76
[표4-6 ] 중국 전자산업의 장단점·····	78
[표4-7 ] 중·한 양국 전자 산업 비교·····	79
[표4-8 ] 중·한 간 자동차 산업의 경쟁 및 보완 관련지수·····	80
[표4-9 ] 중·한 자동차부품의 수출경쟁력·····	81
[표4-10] 중·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비교·····	82
[표4-11] 중국과 한국 양국의 섬유산업의 발전 단계·····	84
[표4-12] 중·한 기술수준 비교·····	85
[표4-13] 실질적 원산지결정기준의 틀 (FRAMEWORK)·····	86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4  
[그림 2-1] 직접운송개념도.....15



## 제 I 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 세계는 WTO 주도의 무역자유화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FTA를 통한 세계시장의 지역 블록화는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8월 기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 협상중이거나 검토 중인 협정은 총 213개가 된다<sup>1)</sup>. 즉,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협정 회원국들의 경제는 EU-Chile, EFTA-Chile, NAFTA 등의 협정들을 체결하고 실행함에 따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주요나라로서 중국과 한국도 이런 지역 블록화 추세에 빼놓을 수 없다. 2003년 이전에는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하나도 없었던 중국은 2008년까지 29개 국가또는 지역과 12개의 자유무역 지역을 건설했다. 지금까지 중국정부에서는 칠레, ASEAN, EFTA, 싱가포르, 파키스탄,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국가나 지역과 이미 협상을 체결하였고, 현재 호주, 페루 등의 국가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인접나라로서 중국과 한국의 중·한 FTA 체결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2004년 11월 양국정상회담을 기점으로 2005년부터 2년간 중·한 FTA에 대한 민간공동연구를 추진하였고, 현재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FTA를 끊임없이 추진함에 따라 중국 경제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무역에서만 보면, 「중·칠레FTA 협정<中智自貿協定>」<sup>2)</sup>을 체결한 후 중·칠 양국의

1) 「中国自由贸易区建设进展情况(중국 자유무역구 추진 상황)」,

中国自由贸易服务网,(중국자유무역 서비스 web )

[http://fta.mofcom.gov.cn/article/aboutfta/cftagaikuang/200809/30\\_1.html](http://fta.mofcom.gov.cn/article/aboutfta/cftagaikuang/200809/30_1.html)

2)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智利共和国政府自由贸易协定(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공화국 자유무역협정)」 ( 「중·칠레FTA 협정<中智自貿協定>」 약칭, 이하는 다 약칭으로 표시하겠다), 2005년11월18일 한국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회의 기간에서 체결되고 2006년10월부터 발효하기 시작했다.

출처: 中国自由贸易服务网,(중국자유무역 서비스 web ) ,<http://fta.mofcom.gov.cn/chile/xieyibeijing.shtml>

교역량이 많이 확대되었다. 2007년에는 147억 달러로, 체결 전 보다 45%가 증가하였다. 그 중 중국에서의 수입액과 수출액은 각 103억 달러와 44억 달러로, 동기보다 각 79%, 42%가 증가하였다. 또한 2002년11월4일, 중국과 아세안(ASEAN) 「중국-아세안 경제협조 협의<中國-東盟全面經濟合作框架協議>」를 체결하고 2010년까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sup>3)</sup>

그 후 2004년11월, 쌍방은 「물품무역협정<貨物貿易協議>」에 서명하고 2005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세관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2007년 중국과 아세안 무역 총액은 2050억 달러로 동기보다 2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6월까지 무역액은 1158억 달러로 동기보다 25.8% 증가하였다.<sup>4)</sup>

한국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을 통상정책의 기조로 삼고 2008년까지 ASEAN, EFTA, 싱가포르, 칠레, 미국 등과 이미 협상을 체결하였고, EU를 포함한 41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칠레 FTA 발효 후 지난 4년간 두 나라의 경제흐름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교역량의 증가이다. 한·칠레 간 교역량은 FTA 발효 전 1년에 비해 발효 후 4년차인 지난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도 2003년 2.98%에서 2007년 7.23%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한국 자동차는 칠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sup>5)</sup>

FTA 협상의 핵심 내용은 관세인하율과 원산지에 관한 것이다. 특히 원산지 규정은 FTA협정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원래 원산지 규정은 그 자체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FTA의 특정 무역정책 조치와 결합된 후, FTA의 무역목적 달성, 산업보호, 투자·무역 확대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준다. 원산지 결정기준의 다름으로 원산지 규정에 의한 경제효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FTA 협정 체결 시 자국에 유리한 원산지기준을 삽입하기 위하여 상당히 치열한 협상이 진행되는 분야로서 매우 중요한 협상과제가 된다. 그래서 원산지규정 전체에 대해 연구하는 것보다 원산지 규정 핵심인 결정기준에 대하여 연구하

3) 中国自由贸易服务网,(중국자유무역 서비스 web ) , <http://fta.mofcom.gov.cn/yatai/xieyijianjie.shtml>

4) 中国自由贸易服务网,(중국자유무역 서비스 web ) , <http://fta.mofcom.gov.cn/yatai/xieyijianjie.shtml>

5) 한국 정책방송 KTV,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273852](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273852)

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연구 목적으로 선정하고 그 연구 결과가 중·한 FTA 협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원산지 규정의 주요내용은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 표시방법, 확인절차로 나눈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중국과 한국의 기 체결된 FTA 원산지결정기준, 특히, 중·칠레 FTA, 한·칠레 FTA 각각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중·한 양국의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향후 중·한 FTA 체결 시 마련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주요산업의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 자료의 출처는 ① 원산지에 관련한 이론 ② 중, 한 양국의 기 체결 FTA 협정문 ③ 중·한 양국 국내 기존의 연구 문헌 ④ 중·한 양국 국내 정부기관, 협회 등을 비롯한 통계자료나 데이터 등이다. 지금까지 중국 국내에서 이루어진 FTA 연구는 거의 FTA 경제효과, 중국과 한국 FTA 가능성, 중국·아세안 자유무역 협정의 경제 영향 등이다. 예를 들어, 「中國-東盟自由貿易對中國經濟影響的一般均衡分析<sup>6)</sup>」 「中韓自由貿易區發展戰略研究<sup>7)</sup>」. 그 외에 중국의 원산지에 대한 연구는 많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반 원산지 규정에 대한 분석으로 국한되어 있다. 본 논문처럼 기 체결 두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비교·분석한 경우는 아직 없다. 한국 국내에서는 한·중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많다. 또한 양국의 주요 산업, 무역특징 등의 비교를 통해 양국의 FTA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 자료도 많다. 그러나 원산지의 결정기준에 대해 분석할 경우에는 거의 세계 주요 FTA 유형의 비교·분석을 활용하는 편이다. FTA 원산지의 핵심 부분은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 확인 절차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원산

6) 林劍文, 「中國-東盟自由貿易對中國經濟影響的一般均衡分析」, 2005年, 福建大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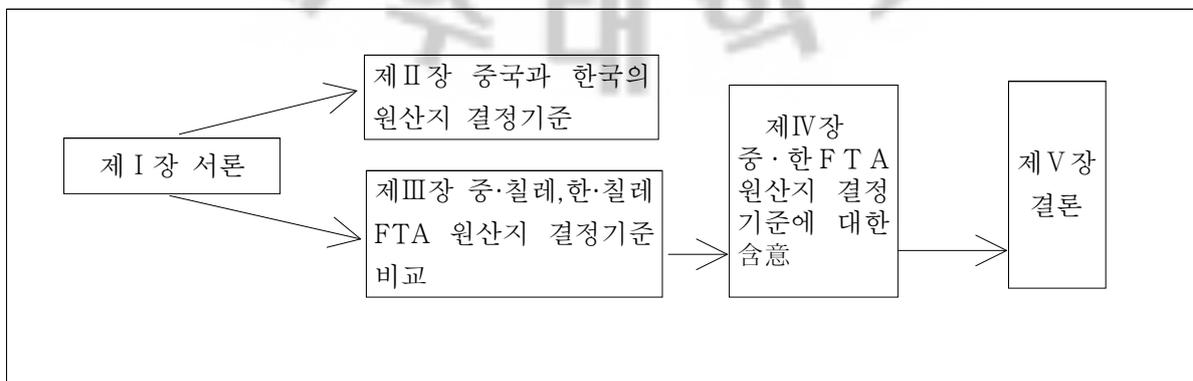
7) 金兌炫, 「中韓自由貿易區發展戰略研究」, 2007年8月, 吉林大學

지 결정기준에 대해서만 논술하겠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보속기준으로 나눈다. 그리고 실질적 변형기준에서는 세번변형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가공)공정기준으로 분류된다. 본 논문에서는 중·칠레 FTA, 한·칠레 FTA 의 여러 가지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중국과 한국의 연구 문헌, 기 체결 FTA 협의문서, 세관 통계결과 등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분석을 통해 중·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제3절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은 총 5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I 장에서는 연구 배경, 목적, 방법, 범위 및 연구의 구성을 제시하였다. 제 II 장에는 원산지 개념, 중국과 한국 기 체결 FTA 상황과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징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포괄적으로 중국과 한국 양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서술하고 중국과 한국 원산지 결정기준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제 IV 장에서는 앞장의 내용 현재 중국·한국의 경제적 현황을 토대로 정책적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제Ⅱ장 중국과 한국의 원산지 결정기준

### 제1절 원산지규정 개념

#### 1) 원산지규정 개념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물품을 생산한 지역을 의미하며,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이란 특정국가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국내법령,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을 말한다.<sup>8)</sup> 다시 말해 상품의 원산지란 특정상품과 그 상품이 생산되었다고 간주되는 특정 지역을 결합시키는 지리적 관련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역”이란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하나의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원산지란 결국 “상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한 국가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 귀속 후의 홍콩, 마카오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다. 다만 EU, NAFTA, ASEAN 같은 정치적, 경제적 독립체가 아닌 지역협력체는 원산지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생산”이란 제조, 가공, 재배, 채취 등 상품의 생산과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될 수 있지만, 생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생산단계가 끝난 이후의 단순한 “결합”이나 “세트화” 등과도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산지는 원재료를 공급한 국가나 중요한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서 자본을 투자하거나, 디자인이나 기술을 제공한 국가, 상표를 소유한 국가 등은 원산지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sup>9)</sup>

원산지규정 그 자체는 무역정책의 수단인 아니며 여타 정책수단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 요소이다. 원산지규정은 국제 무역 중의 세관통계를 위해

8) WTO,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Article, 1, 1994.

9) 관세청, 「원산지 제도」, 2004, www.customs.go.kr

상품의 국적을 판정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세계 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기업 글로벌화도 심화되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경제 이익 최대화를 추구함으로써 한 나라에서만 제조·생산하지 않고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고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에서 수입된 재료를 가공하고 생산한다. 이렇게 하면 한 화물이 여러 국가에서 생산되는 경우 있다. 이 때는 그 화물에 원산지 판정이 옛날 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sup>10)</sup>

그래서 국가는 통일된 원산지 판정기준을 정할 수 없다. 원산지 기준이 다름에 따라 화물에 부과되는 관세도 다르다. WTO 출범 이후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대폭 완화되었으나 보호무역에 대한 수요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정책 수단을 공급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때, 원산지 규정은 판정기준에 따라 상이한 관세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은 국가에서는 원산지 규정을 보이지 않는 새로운 장벽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민감 산업 보호, 신기술 수입, 국내 산업 조정 등 그 영역에 있어 결코 무시하지 못할 역할을 수행한다.<sup>11)</sup> 최근에 많은 국가는 2개 이상의 원산지 규정을 병행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특혜원산지 규정이 6개, EU는 14개, 호주는 5개의 원산지규정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간 FTA 체결의 확산에 따라서 회원국들간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면 그 특혜관세는 회원국산 상품에 한해 그 혜택이 돌아간다. 이에 회원국산 상품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각국과 각 지역에서는 자국이나 본 지역에 적합한 다소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현재 APEC 내에서만 59개 이상의 원산지 규정이 병행되고 있다.<sup>12)</sup> 따라서 공정하고, 간단·명료한 통일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GATT, 관세협력기구(Customs Cooperation Council, CCC),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ommerce Chamber, 약칭 ICC) 등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GATT 초기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47년 제정된 GATT협정은 제9조에는 “원산지 표시” 규

10) 梁静, 「我国原产地规则存在的问题与对策」, 2006.10, p.50

11) 何金辉, 「论我国原产地规则的不足和完善」, 吉林大学, 2008

12) 许海峰, 「国际贸易中原产地规则比较研究」, 2005, p.4

정을 두었다. 그러나 각국의 의견 불일치로 국제적인 기준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후 1973년 관세행정의 국제적 표준화와 세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일본의 교토에서 개최된 CCC 41/42차 이사회에서는 소위 국제관세법인 교토협약을 제정하여 부속서 D.1에 원산지규정을 마련하고 원산지판정기준을 비롯하여 가입국이 적용할 수 있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을 수용한 국가는 20여 개국에 불과, 강제성이 결여되어 국제적 통일규정으로 발전되지 못하였다. 결국 각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원산지규정을 시행하게 되었고 주요 국가들은 원산지 규정을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 무역 분쟁을 야기시키기도 한다.<sup>13)</sup> 국제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원산지규정이 본래의 목적 이외에 무역장벽의 효과를 수반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 원산지기준의 조화를 우루과이라운드(UR) 비관세부문의 협상의제로 채택, 비특혜교역에 대한 통일원산지기준을 UR 후속협상에서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UR 타결 이후 GTTA를 대체하여 설립된 WTO가 출범되면서 1995년7월 국제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와 협력하여 통일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의 제정<sup>14)</sup>을 위해 현재 다자간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을 위한 작업은 다음과 같다. WTO가 세계관세기구에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작업을 요청하면, 세계관세기구 산하의 원산지규정기술위원회(ICRO)에서 기술적인 산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WTO 산하의 원산지규정위원회(CRO)에서 정책적 결정을 한후 WTO 일반이사회에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WTO각료회의에서 이를 확정한다.<sup>15)</sup>

FTA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은 관세철폐로 인해 나타난 혜택을 회원국이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3국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고 있으며, 회원국간의 교역확대, 직접투자의 확대등을 달성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정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통일 원산지 규정과의 차이가 발생한다.

13) 조미진, 여지나, 김민성,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2008, p.16

14) 최홍석, 지종철, 최양식,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 무역협회, 2007.8, p.6

15) 조미진, 여지나, 김민성,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2008, p.17

## 2) 원산지규정의 종류

세계 각국의 원산지협정을 보면 크게 2가지의 유형, 즉 유럽연합(EU)이 FTA 체결시 활용하는 PANEURO 모델과 북미지역의 NAFTA 모델로 나눌 수 있다, 동아시아는 고유의 특혜원산지 모델이 없고 EU의 PANEURO 모델과 NAFTA 모델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sup>16)</sup>

원산지규정은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즉, 적용대상에 따라 화물원산지규정과 서비스원산지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원산지 판정기준은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적규정과 특정물품에 별도 적용되는 특별규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규정 중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의 세번변경기준은 일반적 규정이고 칼라 TV 등에 적용하는 부가가치기준과 부가가치기준에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가공공정기준은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대부분 적용목적에 따라 원산지 규정을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원산지표시, 쿼터 등 관세 특혜 이외의 목적에 적용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no-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나눈다. 그 이유는 특혜 원산지규정은 특정 국가에 관세의 편익을 제공하므로 정책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그 성격상 우루과이라운드(UR)와 같은 가입국간의 다자간 협약(Multilateral Agreement)보다는 당사국간의 양자협약(Bilateral Agreement)으로 규율하는데,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무역정책의 요소라기보다는 무역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WTO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도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여 적용대상을 원칙적으로 비특혜 원산지규정으로 한정하고 있다.<sup>18)</sup>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혜원산지 규정과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혜원산지란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한 국가가 특정국 상품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관세 상의 우대를 하는 일반적 특혜규정과 FTA와 같이 국가간 협정에 의하여 쌍방적으로 우대하는 쌍방적 특혜

16) 辛東圭,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in the Korea's Free Trade Agreement)」, 2006년8월, p.27

17) 최홍석, 지종철, 최양식,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 무역협회, 2007.8, p.8

18) 최홍석, 지종철, 최양식,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 무역협회, 2007.8, p.9

규정이 있다.

전자에는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와 한국의 남북한 내부거래에 따른 원산지규정이 이에 해당된다.<sup>19)</sup> 후자의 쌍방적 특혜규정으로는 관세동맹 또는 북미자유협정(NAFTA)과 각종 FTA, UNCTAD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제도(GSTP), ESCAP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제도(방콕협정,GSTP), WTO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제도(TNDC)등이 있다. 이처럼 특혜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와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국가의 상품에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원산지규정은 수혜국을 정확히 식별함으로써 제3자 국가가 부당한 혜택을 입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특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하는 유럽연합의 PANEURO모델과 북미지역의 NAFTA모델의 원산지 규정에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은 관세율 인하라는 특혜와 관련 없이 무역정책상 수출입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을 말한다. 즉, GATT의 최혜국대우, 특정국가상품의 수입제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차별적인 수량제한조치, 관세쿼터 등의 조치와 같은 비특혜적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원산지를 판정하여 예외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해서 적용한다.<sup>20)</sup>

이밖에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적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협약(CITES)<sup>21)</sup>, 국민보건을 해치는 물품의 반입을 저지하기 위한 검역제도상의 원산지별 수입제한 제도, 무역통계의 작성에서 수출물품 원산지 결정을 위한 기준, 국내산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한 규정 등이 있다. 이러한 원산지규정의 내용은 분명하게 명시하여 예측가능한 적용으로 국제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도움<sup>22)</sup>이 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 KOTRA, 「WTO 통일원산지규정 협상동향과 대응방안」, 2004.9 p.3

20) 정재완, 「전계서」, pp.73-75

2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정(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

22)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문 서문

### 3) 원산지 결정기준과 확인 절차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의 구성내용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한 실체적 규정과 세관공무원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과정 및 이를 위한 증명서류 청구·관리 등 제반절차를 정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구성된다.<sup>23)</sup>

#### (1)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규정은 국가마다 다르며 그 자체의 복잡성, 불명확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 등으로 국제적인 통일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도 없는 것이 실정이다. 다만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두 가지의 기본적 기준에 준거하고 있다. 즉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a)과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a)이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세번변경(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기준, 부가가치(VC: Value Content)기준, 특정(주요)공정(SP: Specific Process)기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따라서 물품의 특성별로 병행하거나 서로 조합하여 사용하는 때도 있다. 실질적 변형기준의 세 가지 주요기준은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조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보조기준으로는 미소기준 (De Minimis Tolerance Rule), 누적기준 (Cumulation)<sup>24)</sup>, 원산지불인정공정 (Non-qualifying Operation), 최소공정기준 (Minimal Operation) 등이 있다. 어떤 때는 직접운송원칙 (Direct Consignment or Direct Transport)도 사용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완전생산기준, 실질변형 기준중의 세 번변경·부가가치·특정(주요)공정 등 세 가지 주요기준, 보조적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 가.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 criteria)

완전생산기준이란 당해상품이 일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생산되었을

23) 최홍석, 지종철, 최양식,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 무역협회, 2007.8, p.19

24) 일부 협정에서는 Accumulation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경우 당해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광물등 천연상품이나 그것만으로 제조된 상품에 적용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은 ① 당해국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품, ② 당해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③ 당해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④ 당해국 선박에 의하여 채포한 어획물, 기타 물품, ⑤ 당해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스크랩, ⑥ 당해국 또는 당해국의 선박에서 ①~⑤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등 6가지 유형이 있다.

#### 나.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a)

물품이 2개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당해물품으로서의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한다. 현재 널리 통용되는 실질적 변화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세번 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등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 변형기준은 물품에 따라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주관성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정책 목적이나 사례별로 해석상의 일관성이 결여됨에 따라 수출입업자에게 원산지 결정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교토협약은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통일상품분류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한다.<sup>25)</sup>

##### 나-1.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세번변경기준이란 통합물품분류표를 이용하여 사용된 원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 번의 제품이 생산된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보통 4단위(Heading) 혹은 6단위(Subheading)가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어떤 때는 2단위(Chapter)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는 2단위(CC), 4단위(CTH), 6단위(CTSH) 변형기준이 순서대로 엄격도가 낮아진다. 다시 말해서 가장 엄격하게 요구하는 변경단위는 2단위이며 4단위, 6단위로 갈수록 낮아진다.

25) WCO, 「전계협약」 4, Recommended

세번변경기준은 국제통상코드인 HS품목번호(세번)에 근거하므로 비교적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하다.<sup>26)</sup> 예를 들어, 라이터의 원산지가 HS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라고 할때, 일본산 라이터 노즐 및 부품(HS9613.90.1000)을 가지고 중국에서 일회용 라이터(HS9613.10.1000)를 생산하는 경우 HS6 단위가 변하므로 원산지는 중국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라이터의 원산지가 HS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라 한다면 이 경우 4단위 세번이 변하지 않아 원산지는 일본이 된다. 이러한 세번변경기준은 실질적 변형의 객관적 기준으로서 WTO통일원산지협정에서도 기본원칙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HS품목분류체계상 가공단계로 품목번호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은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HS 8715호의 경우 유모차와 그 부분품을 동시에 분류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분품을 수입하여 유모차를 제조하여도 부분품과 제품의 HS번호가 동일하여 아무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sup>27)</sup>

#### 나-2. 부가가치기준 (Value Content)

부가가치기준이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특정한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제조 또는 가공작업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실질변형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부가가치기준을 규정하는 경우 “특정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특정비율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는 방식과 “특정국산 이외의 원재료의 가치가 특정비율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sup>28)</sup> 이러한 부가가치기준은 세번변경이 실질적 변형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주요공정기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된다.

부가가치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상품가격에서 동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뺀 후에 이를 상품가격으로 나누는 공제법과 상품가격에서 동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상품가격으로 나누는 직접법이 있다. 또한 공제법과 같지만 완제품의 순원가를 대입하여 가치를 산출하는 순원가법이 있다.<sup>29)</sup>

26) 한국의 세번은 총 10단위이나 세계공통의 세번은 6단위이므로 품목별 원산지협상은 보통 세 번 4단위 또는 6단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중국의 세번도 총 8 단위이다.

27) 辛東圭,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in the Korea's Free Trade Agreement)」, 2006년8월, p.7

28) 최홍석·류원택, 「원산지 이론과 실무」, 2004. p27

부가가치기준은 협정문이 간단·명료하여 협상하기도 용이하고 규정하기에도 쉽고 간편하다. 그러나 이 기준은 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 등락에 따라 원산지개수시로 변할 수 있고, 원가조작이 가능하여 원산지 결정에 상당한 마찰이 발생된다.

[공식1] 고제법

$$\text{역내 가치포함 비율} = \frac{\text{가격} - \text{비원산지재료 가치}}{\text{가격}} \times 100$$

[공식 2] 직접법

$$\text{역내 가치포함 비율} = \frac{\text{원산지재료 가치}}{\text{가격}} \times 100$$

[공식 3] 순원가법

$$\text{역내 가치포함 비율} = \frac{\text{원산지 재료 가치}}{\text{가격}} \times 100$$

나-3. 주요(특정) 공정기준 (Specific Process)

주요공정기준은 개별 물품별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생시켜주는 가공작업을 기술한 일반적인 명세표를 사용하여 지정된 가공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기준의 실질적인 적용은 제조·가공 공정의 리스트에 의하며, 리스트는 “원산지를 인정하는 특정한 공정”을 지정하는 적극적인 방식과 “특정 공정만으로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소극적인 방식이 있다. 다시 말하면, 중요 공정기준은 지정된 생산 공정 수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므로 객관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생산 공정을 왜곡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주요(특정)공정기준은 단독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섬유제품이 있다.

29) KOTRA 통상전략팀, 「FTA 원산지규정 활용 가이드」. 2004. p.15

[표 2-1] 원산지 세부기준별 특징과 주요 장단점<sup>30)</sup>

구 분	주요 장단점
세번변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재료와 완제품간의 HS 번호 여부 확인</li> <li>· 신속 정확하고 객관적이나, HS품목분류체계상 가공단계별로 배열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적용 곤란</li> </ul>
부가가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정문이 간단·명료하며, 협상시간 단축</li> <li>· 자의적인 원가조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회계기준이 상이할 경우 마찰 소지</li> <li>· 기술개발비용, 유통비용, 상표비용 등도 원가에 포함되므로 실제 생산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원산지가 인정되는 모순이 발생하여 역외산 물품의 우회수입 유발</li> <li>· 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등락에 따라 원산지가 수시로 변동되어 안정적 특혜세율 적용이 곤란</li> </ul>
주요(특정)공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공정의 수행여부 확인</li> <li>· 객관적이나, 빠른 속도로 출현하는 새로운 제품의 생산공정을 반영하기 곤란하여 기술발전에 걸림돌</li> </ul>

자료:정인교외 3명 「우리나라 FTA 원산지(ROO)연구 및 실증분석」 인용

#### 다. 보조적 원산지 결정기준

아래에서는 보조적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여기에는 직접운송기준, 미소기준, 불인정공정, 누적기준 등이 있다.

##### 다-1. 직접운송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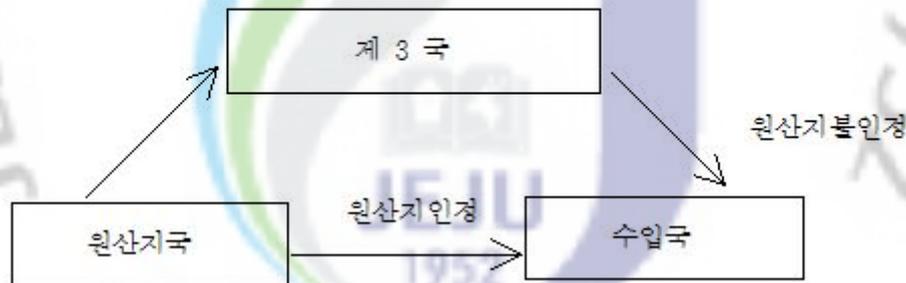
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더라도 운송도중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원산지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다만, 운송상의 목적으로 제3국에서 환적한 경우에는 원산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경우 환적과정에서 운송에 필요한 경미한 작업 이상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물품이 홍콩을 거쳐 한

30) 정인교외3명, 「우리나라 FTA 원산지(ROO) 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년, p.28

국으로 수입된 경우 홍콩에서 단순히 환적작업만 거친 경우에는 싱가포르로 원산지가 인정된다. 하지만 일단 홍콩에서 내수용으로 통과되었다가 다시 한국으로 재판매되어 한국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더 이상 싱가포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①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또는 ② 박람회, 전시회 등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비원산지국(홍콩)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이 전시 목적에 사용된 후 한국으로 수출된 물품의 경우에 당해물품이 비원산지국(홍콩)의 보세구역 등에서 세관 감시 하에 환적 또는 일시장치 등이 이루어지고, 이들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한국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당해물품의 원산지는 싱가포르로 인정된다. ([그림 2-1] 참조)<sup>31)</sup>

[그림 2-1] 직접운송개념도



#### 다-2. 최소기준(미소기준 De Minimis)

최소기준이란 상품을 생산하는데 역외산 수입재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세번변경 기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10% 내외의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이 허용된다. 이 기준은 세번변경 기준 등의 일반적인 원산지 판정기준에 예외를 허용하는 기준으로, 원산지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sup>32)</sup>

31) 정인교외3명, 「우리나라 FTA 원산지(ROO) 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년, p.57

### 다-3. 누적기준(Cumulation)

누적기준이란 상품을 생산하는데 특정 지역(FTA 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국내산원재료와 마찬가지로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기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양자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 3 형태로 나누어진다.<sup>33)</sup>

### 다-4. 불인정공정(Insufficient Operations)

불인정공정기준이란 세번이 변경되는 등 형식적으로는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제품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최소가공공정만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로 인정해 주지 않은 기준이다. 대부분의 경우 각 FTA 별로 불인정공정을 지정한다.<sup>34)</sup>

#### (3) 원산지 확인절차

원산지 확인절차는 원산지 관련 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하거나 수입국의 통관부처에서 관련 서류의 조회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함으로써 원산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수입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원산지요건의 충족여부는 서면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에는 크게 기관증명제(Authorized Certification), 자율증명제(Self-certification) 및 절충식 3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sup>35)</sup>

#### 4) 원산지규정의 기능과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

##### (1) 원산지규정의 기능

원산지 제도의 운영을 위한 범규범으로써의 원산지규정의 일반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자 보호기능이다.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원산지의 전통적 방식으로 만들어진 특정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성가와 신용의 차별화에 따 방식 상

32) KOTRA 통상전략팀, 「FTA 원산지규정 활용 가이드」, 2004. p.12

33) KOTRA 통상전략팀, 「FTA 원산지규정 활용 가이드」, 2004. p.12

34) KOTRA 통상전략팀, 「FTA 원산지규정 활용 가이드」, 2004. p.13

35) 辛東圭,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in the Korea's Free Trade Agreement)」, 2006년8월, p.12

표권 등의 지적재산권과 같은 일종의 무형의 권리가 인정되며, 거래 시 타지의 생산품과 구별하여 높은 가격이 매겨지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양질의 물품으로 신용을 인정받아 구매자로부터 우선 선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소비자 보호기능이다.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에게 물품의 생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과정에서의 오해, 혼동, 피해 등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은 일반적으로 생산기술이 우수한 선진국에서 저개발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과 자국 생산품을 차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셋째,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 보호기능이다. 무역이 자유화되어 모든 국가로부터 수출입이 개방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안전, 본국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에 대한 위협이나 본국 환경에 대한 파괴도 무역 자유화에 따라 온다. 이는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특정지역의 특정물품에 대하여 수입 제한을 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넷째, 산업 및 무역정책기능이다.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환경에도 불구하고 일정조건하에서 자국의 산업발전과 국내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무역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가 수입물품에 대해 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하거나 특정물품에 대하여 수입수량을 할당하여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무역을 증진하기 위하여 호혜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특정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양허 등 특혜조치를 취하여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발전과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들 경우에 원산지규정은 우회 수입방지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거나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인하 또는 인상하는 특혜·비특혜조치로 산업 및 무역 정책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36)

요즘은 지역협정마다 원산지규정이 각기 다르며,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그리고 차별성으로 원산지규정의 적용과정에서 상당한 무역장벽적 효과를 초래

---

36) 尹姬淑, 「한·중·일 FTA 추진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한 연구」, 2004년10월, pp.28-29  
최홍석, 지중철, 최양식,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 무역협회, 2007. pp.9-11  
위의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함.

하고 있다.<sup>37)</sup> WTO로 반덤핑 등을 비롯한 명료한 무역보호 수단을 시행하기 더 어려워진 이런 상황에서는 원산지규정은 각국의 새로운 보호무역수단이 되고 있다.

다섯째, 지역협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능을 들 수 있다. 지역간 협정이 갖는 경제적 차별효과는 지역간 협정에 속한 회원국간에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역내국 제품이 인위적인 경쟁력의 우위를 가짐으로써 무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다.

## (2) 원산지규정의 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

원래 원산지 규정은 무역정책 목적상 국가별 차등대우가 필요한 경우에 당해 무역제도에 종속되어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하며, 그 자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직접 무역을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원산지 규정은 단지 특정한 무역조치와 결합할 때 효력이 발휘된다. 다시 말해서 원산지 규정은 각종 무역조치의 효과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킴으로써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이 FTA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개념화 또는 계량화 하기는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실제로 무역의 흐름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명확히 원산지규정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경제적인 영향을 다음에서와 같이 살펴보겠다.

### 가. 비역내산 물품 우회수입

역내무역에 특혜관세를 양허하는 경우 역내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만 낮은 관세가 허용되는바, 역외국의 역내국을 통한 우회수입(Trade Deflection)방지는 원산지규정에 있어 주요사항으로 고려된다. 양국간 특혜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제3국의 간접적 진출로 인해 저하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국간 원산지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이중 자물쇠(Double Lock)”의 수단으로서 원산지규정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원산지판정기준에서 50% 이상 역내

37) 김창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나타난 자유무역(FTA)의 통상정책적 도구로서의 원산지규정」, 「충북개발연구, 제9권 제1호」, 충북개발연구원, 1998년6월, pp.31-38

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에 무관세 혜택이 부여된다고 하자. 제3국에서는 이러한 무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 역내 부품사용 비율이 증가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역내 어느 회원국을 중간 매개체로 특혜관세를 받거나 간단한 가공을 통해서만 역내무역 원산지를 받아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3국의 우회수입을 방지할 수 있다.

#### 나. 회원국간 교역확대

특혜무역협정의 체결은 역내시장의 규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원산지규정에 의거하여 역외국들의 제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므로 회원국간 교역확대를 통한 무역창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특정 상품에 대한 FTA 체결하기전의 역내 관세율이 높은 비율일 때 그 효과는 더 두드러진다. 왜냐하면 당해 동종 상품이 원산지규정에 의해 역외 산으로 판정되면, 역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높은 관세를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관세로 거래되는 역내상품과의 가격경쟁에 있어 열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산지규정은 역외국 상품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게 되는 반면 역내 교역은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 다. 외국으로부터 투자 유입

체결국이 아닌 역외 국가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다. 따라서 역외 국가는 역내 직접투자 등을 통하여 상쇄하려고 하게 된다. 그러므로 역외 국가로 부터의 직접투자 증가하게 되다. 그 예로 과거 NAFTA 출범을 전후하여 멕시코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했던 실례가 있다.

그러나,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지역통합의 발전과 역내 산업보호를 위해 역내 원산지규정요건으로써, 높은 역내부가가치율을 요구하면 역외 상품의 역내시장으로의 접근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은 무역장벽의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역외국이 무역전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역내국으로 생산기지를 인위적으로 이전함에 따라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인 곳에 투자가 이루어져 투자구조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그 이외 부가가치기준에 따른 원산지 규정의 경우, 생산단계 중 특정부품을 특화하기 때문에 산업구조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

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부품에 특화하느냐에 따라 비효율적인 산업구조가 발생되기 때문이다.<sup>38)</sup>

## 제2절 중국과 한국의 기 체결 FTA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 1) 세계 주요 FTA 현황

오늘날 세계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각국 관세의 인하, 국제시장의 통합, 지역주의의 확산 등으로 개방화·글로벌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외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세계 각국은 지역별 경제통합과 동시에 원거리 국가 간의 FTA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특정 국가간에 서로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지역 경제 통합이다. 2008년8월말까지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가운데 발효중인 RTA 건수는 총 197건이며, 그중에 자유무역협정(FTA)112건이다.<sup>39)</sup> 그리고 2007년이래에, 역사적인 무역협정이 나타난다. 예로 한-미 FTA, 일본-아세안 경제협조협정, EU-북미주 통일시장 등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전개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sup>40)</sup> 미주와 아시아에서도 FTA 체결이 확산되고, 대륙 간 국가의 FTA 체결도 확산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체결된 협정은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sup>41)</sup>.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 무역규범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8)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in the Korea's Free Trade Agreement」, 辛東圭, 2006년2월, p14-15

39) <自由贸易协定中的政府采购> 2008年月4月28日, 商务部网  
[http://www.sc.gov.cn/zwgk/swzc/gzyj/200804/t20080428\\_272606.shtml](http://www.sc.gov.cn/zwgk/swzc/gzyj/200804/t20080428_272606.shtml)

40) 고준성·노재봉·박번순등, 「글로벌 시대의 FTA 전략」 2005, p.8

41) 卞蓮花, 「韓中 FTA 締結 妥當性과 推進方向 에 관한 研究」, 2006,12, pp.5-11

## 2) 세계 주요 FTA 협정 원산지 규정의 특징

대부분 FTA 협정에서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구분된다. 즉, 한 국가에서 완전 생산된 제품이 아닌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품목별 기준을 부속서로 별도로 두고 있으며, 보충적인 기준으로 최소허용기준, 누적원칙 등을 적용하고 있다. EFTA, EEA, 미국-싱가포르 FTA, EFTA-싱가포르 FTA의 경우에는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도 인정하고 있다.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대부분 FTA 원산지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농업과 광업제품 등에 대해 여전히 유효한 평가기준이지만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현시점에서는 적용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며, 대부분 제조물품에는 실질적 변형기준이 적용된다. 실질적 변형기준의 경우 AFTA를 제외하고 NAFTA, EFTA, EEA, 한-칠레 FTA, 일-싱 FTA, 미-싱 FTA, EFTA-싱 FTA 등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세번변경기준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HS코드가 널리 공통으로 사용되며, 행정적으로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AFTA를 제외하고 부가가치기준은 대부분 세번변경기준의 보조적인 또는 대체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역내 부가가치 포함비율은 FTA 규정마다 그리고 품목별로 상이하지만 대체로 60% 기준이 많으며, AFTA의 경우는 40%로 가장 낮다. 특정공정기준은 대부분 FTA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FTA별로 다르지만 제품의 조정가격 또는 공장도가격 기준으로 7-10% 범위내의 역외산 재료의 포함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역외가공인정의 경우 EFTA, EEA, 미-싱 FTA, 일-싱 FTA, 한-싱 FTA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sup>42)</sup>

## 3) 중국과 한국의 기 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의 특징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각국과의 FTA 추진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외교안보적 영향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중국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

42) 최장우, 「한-FTA 체결국간 원산지제도 비교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2007년11월, p.336

다. 그 결과 최근 중국은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국은 2003년부터 FTA 추진로드맵에 따라 동시다발적 FTA 추진, 칠레, 싱가포르, 미국 등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다.

[표 2-2] 중국과 한국의 FTA 추진현황

구분	기 체결	협상 중	검토 중
중국	홍콩 (2003.6 체결) 마카오 (2003.10 체결) ASEAN (2005.7 상품분야 발효, 2007.2 서비스분야 체결) 칠레 (2006.10 발효) 파키스탄 (2006.11 체결) 뉴질랜드 (2008.4 체결, 2008.10 발효) 싱가포르 (2008.10 체결)	호주 (2008.9 제12차 협상) GCC (2006.7 제4차 협상) 페루 (2008.1 제1차 협상) 아이슬란드 (2008.9 제2차 협상) 노르웨이 (2008.9 제1차 협상) SACU(South African Customs)(협상 예정)	한국 인도 코스타리카
한국	칠레 (2004.4 발효) 싱가포르 (2006.3 발효) EFTA (2006.9 발효) 미국 (2007.4 타결) ASEAN (상품분야 2007.6 발효 ) ASEAN (서비스분야 2007.11 서명)	ASEAN(투자) (2008.7 제23차 협상) EU (2008.1 제6차 협상) GCC (2008.7 제1차 협상) 캐나다 (2008.3 제13차 협상) 멕시코 (2008.6 제2차 협상) 일본 (2008.6협상재개검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실 무협의)	중국 호주 뉴질랜드 터키 러시아 페루 MERCOSUR

자료: 저자 정리

(1) 중국 기 체결 FTA 원산지규정 특징

[표 2-3]는 중국이 현재까지 체결·발효중인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내

용으로서 중·ASEAN, 중·칠레, 중·파키스탄, 중·뉴질랜드 FTA의 원산지규정 조항을 비교한 표이다.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각 FTA 협정조문의 구성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직접운송원칙의 경우 모든 FTA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FTA별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그 조항의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원산지규정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는 실질변형기준의 경우, 중·ASEAN 및 중·파키스탄의 경우는 부가가치기준만을 적용하고 있고, 중·칠레 FTA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주로 사용하면서 세번변경기준을 일부 보충하는 방식을 채용하였다. 중·뉴질랜드 FTA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주로 사용하면서 부가가치기준을 보충하는 방식을 채용하였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중·뉴질랜드 밖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부가가치비율은 3개 FTA에서 모두 40% 수준이다, 그러나 4개 FTA에서 모두 단일 공제법을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매판매용 포장용품 및 포장용기와 관련하여 중·칠레와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포장용품과 내용품이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ASEAN과 중·파키스탄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중간재와 관련하여 중·칠레와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하나의 항을 따로 할애하여 7가지로 분류된 세부항목을 명시한 반면, 중·ASEAN에서는 전력과 연료, 공장과 설비나 기계 등을 나열하였다. 누적기준에 있어서 특히 중·ASEAN FTA에서는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등 FTA 역내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치는 모두 원산지 가치로 인정하는 완전누적(full cumulation)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소기준과 관련하여 다른 FTA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중·칠레와 중·뉴질랜드 FTA에는 미소기준으로 각 8%, 10%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중·칠레 FTA에만 전시회를 위해 수출된 상품의 원산지규칙이 있다. 즉, 양국 원산지 제품이 비역내국가로 전시회 목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중국이나 칠레 양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전 과정이 세관통제를 받고, 물품이 전시회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한에서 동 FTA의 특별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인정

공정기준(최소공정기준)의 경우, 중국의 기 체결 FTA에서 모두 조항을 두고 있는데, 다만 그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sup>43)</sup>

다시 정리하면 중국은 부가가치 기준을 선호하지만 선진국과 처음으로 체결한 중·뉴질랜드 협정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볼 수 있다. 즉, 중국은 이 협정에서 세번 변경기준을 주요기준으로 채택하고 한국처럼 품목별로 자세히 규정하였다. 또한 부가가치 포함율도 40%에서 45%로 상향되었다.

[표 2-3] 중국 기 체결 FTA 원산지 결정기준 내용

구 분	중·파키스탄	중·뉴질랜드	중·칠레	중·ASEAN
품목별 원산지 기준	×	0	0	×
원산지 상품 -완전생산기준 -실질변형기준	0	0	0	0
누적기준	0	0	0	0
직접운송기준	0	0	0	0
중간재	0	0	0	0
중립재(간접재료)	0	0	0	×
미소기준	×	0	0	×
불인정공정	0	0	0	0
대체가능한 상품과 재료	×	0	×	×
부속품·예비부품 및공구	0	0	0	0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	0	0	×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0	0	0	0
미조립 및 분해된 상품	×	×	×	×
세트	×	×	0	×
개성공단원산지특례조항	×	0	×	0
전시	×	×	0	×

자료: 「중·뉴질랜드 FTA」 협정과 조미진·여지나·김미성의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 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리

## (2) 한국 기 체결 FTA 원산지규정 특징

한국이 현재까지 체결하여 발효 중인 협정은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43) 조미진·여지나·김미성,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2008년,p30

한·ASEAN 등 4개의 FTA가 있다. [표2-4]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각 FTA 협정 문상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기본적으로 표현이나 용어상의 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에 대한 자국 선박의 요건 정의시 각 FTA간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ASEAN FTA에서는 선박의 국적을 결정짓는 요건에 대하여 기국조건(vessel flying the flag of a party)과 등록조건(vessel registered or recorded with a party)이 동시에 만족될 경우에만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반면, 한·EFTA FTA에서는 기국요건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을 제외하고 모든 FTA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역내국에서 채굴한 광산물, 재배·수확한 농산물, 수렵 또는 어로작업으로 획득한 물품이 그 주요대상으로 소, 말, 돼지, 닭등 산 동물의 경우 역내에서 번식되어 사육된 것만 해당된다. 그리고 역외에서 수입한 씨앗(seed), 인경(bulb), 근경(rootstock), 삽수, 접수 또는 기타 산식물의 일부에서 성장한 농산물 및 원예작물은 원산지가 인정된다.<sup>44)</sup>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은 실질변형기준에 의하여 원산지가 결정되는데, 품목별로 다시 단일기준(부가가치기준 혹은 세번변경기준 중 하나의 기준 적용), 선택기준(부가가치기준 혹은 세번변경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조합기준(부가가치기준과 세번변경기준 혹은 혹은 주요공정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을 동시에 충족)으로 나뉘어 원산지가 결정된다. 한·ASEAN FTA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3개 FTA에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3개 FTA 협정문에 나타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면 세번변경기준을 위주로 하면서 부가가치기준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한·ASEAN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거나 HS 4단위 세번변경이 일어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직접법과 공제법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FTA마다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과 원산지를 인정하는 부가가치비율은 모두 다르다. 우선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

44) 김석오(2006), KIFP, 간담회 자료

로 한·칠·레, 한·ASEAN FTA에서는 공제법과 직접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공제법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한·EFTA FTA에서는 당해 제품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MC)이 당해 제품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부가가치비율은 공제법 기준으로 한·칠레 FTA에서는 45%,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45%-55%, 한·ASEAN FTA에서는 40% 수준이며, 한·EFTA FTA의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부가가치 비율은 30-60% 수준에 이른다. 한편, 세트, 중간재 및 포장용품 등의 취급 관련 조항의 포함 여부가 FTA마다 다르며 미소기준과 불인정공정의 경우 협정문의 규정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소매판매용 포장용품 및 포장용기의 경우 HS 품목분류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이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를 분류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ASEAN FTA에서는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EFTA FTA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미소기준의 경우 조정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비원산지 재료의 포함을 허용하는 범위가 FTA마다 다르다. 그리고 불인정공정기준은 단순, 경미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기존 4개 FTA에서 모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협정문에 나타난 불인정공정의 구체적인 정도와 유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FTA 원산지규정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특례원산지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한·칠레 FTA를 제외하고 모든 FTA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sup>45)</sup>

45) 조미진·여지나·김미성,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2008년, p.24

[표 2-4] 한국 기 체결 FTA 원산지 결정기준 내용

구분	한·칠레	한·ASEAN	한·EFTA	한·싱가포르
품목별 원산지기준	0	×	0	0
원산지 상품 -완전생산기준 -실질변형기준	0	0	0	0
누적기준	0	0	0	0
직접운송기준	0	0	0	0
중간재	0		×	0
중립재(간접재료)	0	0	0	0
미소기준	0	0	0	0
불인정공정	0	0	0	0
대체가능한 상품과 재료	0	0	0	0
부속품·예비부품 및공구	0	0	0	0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0	×	0	0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0	×	0	0
미조립 및 분해된 상품	×	×	×	0
세트	×	×	0	×
개성공단원산지특례조항	×	0	0	0
전시	×	×	0	0

자료: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조미진, 여지나, 김민성) 자료를 인용

### 제Ⅲ장 중국·칠레, 한국·칠레 FTA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 제1절 중국·칠레 FTA 원산지 결정기준

2004년 11월 18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리카르도 라고스 에스코바(Ricardo Lagos Escobar) 칠레 전 대통령을 만나고 양국은 「중국·칠레 자유무역국 협상 선언을 공동 발표하였다. 2005년 11월 18일,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APEC 비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중국·칠레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6년 10월 1일부터 그 협정은 발효되기 시작했다. 「중국·칠레 FTA 협정」에서는 물품교역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Market Access, 원산지 규정, 기술적 장벽, 중재 등이 있다. 또한 경제, 중소기업, 문화, 교육, 과학, 환경보호, 지적 소유권, 투자추진, 광물 산업 및 공업 등 모든 영역에 협조를 포함한다.

협정이 발효한 후 양국의 무역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양국 무역액이 14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로 상승하였다.<sup>46)</sup> 중국·칠레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양국은 서로 특혜를 줌으로써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비회원국의 우회무역도 따라 올 것이다.

원산지규정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 조치의 효과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국제 법규·법률, 규정, 판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FTA는 협정마다 원산지 규정 내용도 다른데, 왜냐하면 원산지규정은 체결국의 경제 발전 수준, 소비상황, 산업구조, 교역특성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칠레 FTA 협정」문은 전문과 보문 15개장, 총 121종, 그리고 부속서 8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정문 중 원산지 규정은 제4장의 원산지 규정과 그 부

46) 中国自由贸易服务网,(중국자유무역 서비스 web), <http://fta.mofcom.gov.cn/chile/xieyibeijing.shtml>

속서3, 제5장의 원산지와 관련한 절차 및 그 장의 부속서4로 나누어져 있다. 중 · 칠레 원산지 규정의 주요내용은 [표 3-1]과 같이 협정 제4장과 부속서3 에 규정 되어 있다.

중국과 칠레 양국간 교역되는 물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의 기본적인 원칙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 기준이다. 이외에는 보조적 원산지 변형 기준을 채택했다.



[표 3-1] 중 · 칠레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내용<sup>47)</sup>

조항별	주요내용 (중국어)	주요내용 (한국어)	주요내용 (영어)
제15조	原产地货物	원산지 상품	Originating Goods
제16조	完全获得货物	완전하게 획득한 상품	Wholly obtained Goods
제17조	区域价值成分	역내가치포함 비율	Regional Value Content
제18조	产品特定原产地规则	품목별 원산지규정	Product Specific Rules
제19조	不得享有货物原产地资格的生产程序	불인정공정	Operations that Do Not Confer Origin
제20조	累计原则	누적계산	Accumulation
제21조	微小含量	최소허용기준	De Minimis
제22조	成套产品	세트	Sets
제23조	附件,备件及工具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제24조	零售用包装材料和容器	판매를 위한 포장재와 용기	Packag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Retail Sale
제25조	运输用包装材料和容器	수송을 위한 포장재와 용기	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Shipment
제26조	中性成分	간접재	Neutral Elements
제27조	直接运输	직접우송	Direct Transport
제28조	展览	전시	Exhibitions
제29조	定义	정의	Definitions
부속서3	产品特定原产地规则	품목별 원산지규정	Annex 3

자: 「중 · 칠레 FTA」 협정문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47)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智利共和国政府自由贸易协定(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공화국자유무역협정)」, 제4장 원산지규정, pp. 12-21

## 1) 완전 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sup>48)</sup>(Wholly Produced Criterion)이란 하나의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특정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은 당해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완전생산기준은 상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sup>49)</sup>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광물 등 천연상품이나 그것만으로 제조된 상품에 적용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은 ① 당해국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품, ② 당해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③ 당해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취한 물품, ④ 당해국 선박에 의하여 채취한 어획물, 기타 물품, ⑤ 당해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스크랩, ⑥ 당해국 또는 당해국의 선박에서 ①~⑤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6개 유형이 있다.

중·칠레 FTA협정에서는 그 전문과 중국 세관이 본 협정을 잘 실행하기 위해 제정한 원산지 관리 방법이 있으며 그 내용은 [표 3-2]와 같이 제정되었다.<sup>50)</sup>

48) 도충구, 「국제 원산지 규정의 적용범위와 그효」, 경상대학 통상·회계학부 교수, 2000, p.178

49) Convention, Article, 4.2 : 「Originating Good」, 1 (b)

50) 「中华人民共和国海关<中华人民共和国与智利共和国政府自由贸易协定>项下进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 海关总署 属令 第151号(「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 공화국 정부 자유무역협정> 하의 수출입물 품 원산지 관리 방법」, 중국 세관 령, 제 151호), 2006년5월30일, 제5조  
「中华人民共和国与智利共和国政府自由贸易协定」(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 공화국 정부 자유무역협정), 제4장 원산지 규정 제 16 조

[표 3-2] 완전하게 획득한 상품

	완전하게 획득한 상품 (중국어)	완전하게 획득한 상품 (한국어)	완전하게 획득한 상품 (영어)
1	在中国或智利领土或者海床采掘的矿产品	중국 또는 칠레 영토나 해저에서 채취한 광물	mineral products extracted from the soil or from the seabed of China or Chile
2	在中国或智利收获的植物或者植物产品	중국 또는 칠레 영역내에서 재배된 식물이나 식물상품	plants and plants products harvested in China or Chile
3	在中国或智利出生并饲养的活动物	중국 또는 칠레 영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in China or Chile
4	由在中国或智利饲养的活动物获得的产品	중국 또는 칠레 영역내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으로부터 획득한 상품	products from live animals raised in China or Chile
5	在中国或智利狩猎, 诱捕或者在内陆水域捕捞所获得的产品。	중국 또는 칠레 영역내에서 수렵, 낚사냥 또는 양국 내륙수역에서 어로로 획득된 상품	products obtained by hunting, trapping or fishing in inland waters conducted in China or Chile
6	在中国或智利的领海或者专属经济区捕捞获得的鱼类和其他产品	중국 또는 칠레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로로 획득한 상품과 가타 상품	products of sea fishing and other products taken from the territorial sea or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China or Chile
7	悬挂中国或智利国旗的船只在 中国或智利专属经济区以外的 海域捕捞获得的鱼类和其他产 品。	중국 또한 칠레에 등록되거나 등 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일방 또는 양 당사 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의 바다 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생 산물	products of sea fishing and other products taken from the sea beyond the exclusive zone by a vessel flying the flag of China or Chile
8	在悬挂中国或智利国旗的加工 船上仅由第(六)项和第(七)项 的产品加工所得的产品。	중국이나 칠레에 등록되거나 등 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 내에서 상기 6-7호에 해당하는 상품으로부터 생산된 상품	products manufactured on board a factory ship flying the flag of China or Chile, exclusively from produc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6)and(7)
9	在中国或智利收集的仅适于回 收原材料的旧物品。	중국이나 칠레 영역에서 수집되 고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품	used articles collected in China or Chile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
10	在中国或智利生产加工过程中 产生并且仅适合于回收原材料 的废碎料。	중국이나 칠레 영역내에서의 생 산 또는 수집되고 원재료 회수용 으로만 적합한 중고품	waste and scrap resulting from manufacturing operations conducted in China or Chile and are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
11	在中国或智利领海以外, 该方 独享开发权的海床或者海床底 土提取的产品	중국이나 칠레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를 탐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해 밖의 해 저로부터 또는 해저 하부에서 당 사국에 의해 채취된 상품	products extracted from the seabed or beneath the seabed outside the territorial sea of China or Chile, provided that they have sole rights to exploit such seabed; and
12	在中国或智利仅由第(一)项至 第(十一)项所列产品加工获得 的产品。	전적으로 1호 내지 11호에서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부 터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 에서 생산된 상품	products manufactured in China or Chile exclusively from products specified in subparagraphs (1) to (11)

자료: 「中華人民共和國海關〈中華人民共和國与智利共和國政府自由貿易協定〉項下進口

貨物原產地管理辦法」과 「中華人民共和國与智利共和國政府自由貿易協定」를 저자 정리

2) 실질적 변형기준

「중국·칠레 FTA 협정」의 원산지 실질적 변형기준은 부가가치기준을 중심으로 삼고 다른 기준을 보조기준으로 한 형식이다. 51)

(1) 세번변경기준

「중국·칠레 FTA 협정」중 세번변경기준으로 2단위와 4단위 변화기준을 채택한다.52) 정리하면 [표3-3]과 같다.

[표 3-3] 「중국·칠레 FTA 협정」 세번변경기준

세번 단위	적용 품목
2단위	제1-16류 및 제22류 제1-5류(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제6-14류(식물성 생산품) 제15류(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16류(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제22류(음료·알콜 및 식초)
4단위	제17-19류 제17류(당류와 설탕과자) 제18류(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9류(곡물·분·전부 또는 밀코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자료: 「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稅則(2008年)」를 참조하여 저자 정리

위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알 수 있다. 즉, 중국과 칠레는 FTA 협정을 체결할 때, 총 97 류53)에 대해 원산지 규정을 제정했는데 세번 변경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하는 품목은 20류 밖에 안 된다. 특히 농수산물과 관

51) 王雪平, 「我国FTA原产地规则浅析」, 2008.1. p. 42

52) 「中华人民共和国海关<中华人民共和国与智利共和国政府自由贸易协定>项下进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 海关总署令 第151号(「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 공화국 정부 자유무역협정> 하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 방법」, 중국 세관 령,제 151호), 2006.5, 부속서 1

53) 「中国-智利自由贸易协定税目税率表」

런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판정할 때, 그 판정기준을 다른 판정기준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2)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 기준은 「중국·칠레 FTA 협정」에서의 원산지 결정기준 중 하나이다. 중·칠레 교역 상품 대부분은 이런 기준으로 판정한다. 협정의 제4장 원산지 규정 및 동 협정의 부속서 3, 그리고 이 협정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中華人民共和國海關〈中華人民共和國与智利共和國政府自由貿易協定〉項下進口貨物原產地管理辦法」(「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 공화국 정부 자유무역협정> 하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 방법」 및 동 방법의 부속서에 의하여 우리는 중·칠레 교역 품목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비율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교역 품목은 보통 물품과 특정 상품으로 나눈다. 보통 물품은 역내가치 포함비율이 40%이상이고 특정 상품은 역내가치 포함비율이 50%이상이다. 그 부가가치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sup>54)</sup>은 다음과 같다.

$$RVC = \frac{V - VNM}{V} \times 100\%$$

RVC: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 비율

V : <Agreement on Customs Evaluation>에 의해, FOB가격을 기초로 조정된 가격

VNM: 생산자에 의한 상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CIF가격),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인 수입원가, 목적 항구나 목적지까지의 보험료와 운임 세부분을 포함한 가격

만약 생산자가 비원산지 재료를 자기 나라 역내에서 획득한 것이라면, 이 비원산지 재료를 제공한 창고에서부터 생산자(비원산지 재료의 구매자)의 공장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운임, 보험료, 포장비 및 기타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54) 이 방법이 <Agreement on Customs Evaluation>과 세계 공인 회계원칙에 맞아야 한다고 중국·칠레 양국의 협정에서 표시된다.

「중국·칠레 FTA협정」에서 부가가치 결정기준으로 원산지가 판정되는 물품을 정리하면 [표3-4]와 같다. [표3-4]에서 HS 품목의 부가가치 비율은 50% 이상이고, [표3-4]에 포함하지 않은 품목의 부가가치 비율은 40%이상이다(「중국·칠레 FTA 협정」 원산지 규정에 따라 제정한 부가가치 기준 이외의 다른 기준에 부합한 품목은 제외함). [표3-4]를 통해, 「중국·칠레 FTA 협정」에서는 부가가치 원산지 결정기준이 많이 채택되었다고 알 수 있다. 또한 중·칠레 FTA 협정문에서 채택된 부가가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과 함께 채택되지 않는다고 알 수 있다.

[표 3-4] 중국·칠레 FTA의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한 HS 품목<sup>55)</sup>

제20류	2916	3909	제44류	7008	8431
제21류	2917	3910	제48류	7009	8450
제23류	2918	3911	제49류	7010	8451
제24류	2921	3912	제51류	7011	8474
제25류	2930	3913	5204	7013	8481
제26류	2933	3914	5205	7208	8509
2801	2936	3915	5206	7209	8516
2804	2937	3916	5207	7210	8544
2806	2941	3917	5208	7213	8702
2808	2942	3920.10	5209	7214	8704
2809	3002	3920.20	5210	7216	8707

자료: 「中華人民共和國海關<中華人民共和國与智利共和國政府自由貿易協定>項下進口貨物原產地管理辦法」(「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 공화국 정부 자유무역협정> 하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 방법」)의 부속서 1를 인용하여 저자 정리

55) 「中华人民共和国海關<中华人民共和国与智利共和国政府自由貿易協定>項下進口貨物原產地管理辦法」海關總屬令 第151号(「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 공화국 정부 자유무역협정> 하의 수출입물 품 원산지 관리 방법」, 중국 세관 령, 제 151호), 2006년5월30일, 부속서 1

[표 3-4] 중국 · 칠레 FTA의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한 HS 품목

2810	3003	3920.43	5211	7217	8708
2811	3004	3920.59	5212	7228	8712
2812	3005	3920.92	5301	7229	8901
2815	3006	3921.12	5306	7306	8902
2817	3102	3921.13	5309	7312	8904
2818	3103	3921.90	5311	7313	9201
2819	3104	3922	제54류	7314	9202
2820	3105	3923.21	제55류	7317	9204
2821	제32류	3923.29	제56류	7318	9207
2822	3302	3923.30	제57류	7320	제93류
2825	3303	4006	제58류	7321	제94류
2826	3304	4007	제59류	7408	9501
2827	3305	4008	제60류	7409	9502
2828	3306	4009.11	제61류	7412	9503
2829	3307	4009.12	제62류	7413	9506
2830	제34류	4009.22	제63류	7415	
2833	제35류	4010.11	제64류	7419	
2834	3601	4010.12	6905	7604	
2835	3602	4010.13	6907	7608	
2836	3603	4010.19	6908	7610	
2839	3605	4010.31	6909	8302	
2840	3901	4010.32	6910	8308	

자료: 「中華人民共和國海關〈中華人民共和國与智利共和國政府自由貿易協定〉項下進口貨物原產地管理辦法」(「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 공화국 정부 자유무역협정> 하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 방법」)의 부속서 1를 인용하여 저자 정리

### 3) 보조적 원산지 결정기준

앞에서 전술하는 것과 같이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

가치기준, 주요(특정)공정기준의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3가지 원산지 판정기준은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을 제정할 때는 보조 원산지 판정기준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칠레 FTA 협정」의 보조적 원산지결정기준에서는 미소(최소)기준, 불인정(최소가공/단순가공)기준, 누적기준, 환적금지 등을 포함한다.

#### (1) 누적기준

「중국·칠레 FTA 협정」 원산지 규정 제20조에서 제정하기를,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나 재료가 타방 당사국 영역내에서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재료는 타방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된다(原產于一締約方的貨物或者材料在另一締約方境內用于組成另一貨物時, 則應該視為原產于后一締約方境內。)” 또한 이 협정에 따른 법령인 「中華人民共和國海關〈中華人民共和國與智利共和國政府自由貿易協定〉項下進口貨物原產地管理辦法」(「중화인민공화국세관 <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 공화국 정부 자유무역협정> 하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 방법」) 제 9 조에서도 이렇게 규정했다. 그리고 앞에서의 누적기준 종류 정의에 의해 「중국·칠레 FTA 협정」의 누적원산지 기준은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이 된다.

#### (2) 최소(미소)기준

최소(미소)기준이란<sup>56)</sup> 비원산지 재료가 전체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미미하여 이 부분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원산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중국·칠레 FTA 협정」 원산지 규정 제4장(제21조)과 이 협정에 따른 법령인 「中華人民共和國海關〈中華人民共和國與智利共和國政府自由貿易協定〉項下進口貨物原產地管理辦法」(「중화인민공화국세관 <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 공화국 정부 자유무역협정> 하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 방법」) 제 11 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즉 일방의 물품을 2단위, 4단위 세 번변경기준에 적용하고 원산지를 판정할 때, 당해 물품은 생산에서 비원산지재

56) 김경원,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2004.12, p50

료를 쓰는 경우에 그 비원산지재료가 아래의 산정방법으로 계산되고 그 재료의 비율이 당해 물품 가치의 8%이하이면 그 당해 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본다.(在適用章改變，4位級稅号改變標準確定貨物原產地時，在生產過程中所使用的部分非原產地材料雖然未能滿足該標準的要求，但是按照本辦法第八條確定的價值未超過該貨物價值8%，該貨物的原產地仍當應視為智利)。따라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 제 1-16 류와 제 22 류, 그리고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 제17류-19류 물품만이 미소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 (3) 불인정공정

불인정공정이란<sup>57)</sup> 앞의 세번 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하더라도 운송·보관·포장·선별 등을 위한 경미한 작업 또는 공정 활동만 거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 않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단순가공기준 또는 최소가공기준이라고도 한다. 「중국·칠레 FTA 협정」 원산지 규정 제4장(제19조)과 이 협정에 따른 법령인 「中華人民共和國海關〈中華人民共和國與智利共和國政府自由貿易協定〉項下進口貨物原產地管理辦法」(「중화인민공화국세관 <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 공화국 정부 자유무역협정> 하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 방법」) 제 10 조에서 [표 3-5] 같이 규정했다.

57) 馬一男, 「FTA규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2005년6월, p.46

[표3-5] 불인정공정 규정

불인정 상황(영어)	불인정 상황(한국어)
1, preserving operations to ensure that the products remain in good condition during transport and storage	1, 운송 또는 저장 목적상 좋은 형태로 상품을 보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2, breaking-up and assembly of packages	2, 포장의 해체나 재포장
3, washing, cleaning, removal of dust, oxide, oil, paint or other coverings	3, 산화물, 기름, 페인트 및 기타 도료의 세탁, 세척, 제거
4, ironing or pressing of textiles	4, 삼유상품의 다림질 또는 눌러서 평평하게 만듦
5, simple painting and polishing operations	5, 간단한 색칠 및 연마
6, husking, partial or total bleaching, polishing, and glazing of cereals and rice	6, 곡물, 쌀의 탈피, 탈각, 부분 또는 전부 의 표백, 광택
7, operations to color sugar or from sugar lumps	7, 설탕에 색칠, 설탕 덩어리로 만들거나 처리
8, peeling, stoning and shelling, of fruits, nuts and vegetables	8, 과일, 견과 및 약채의 타필, 씨를 빼거나 껍질을 깎음.
9, sharpening, simple grinding or simple cutting	9, 뾰족하게 깎기, 아니면 간단하게 쪼아 고치거나 간단하게 절단
10, sifting, screening, sorting, classifying, grading, mat chking(including the making-up of sets of articles)	10, 강별, 선별, 선택, 분류, 등급 나눔, 정합(세트 화물의 조합도 포함)
11, simple placing in bottles, cans, flasks, cases, boxes, fixing on cards or boards and all other simple packaging operations	11, 병, 통, 부대, 상자, 함 등으로 간단하게 포장, 판지, 나무판에 고정, 또한 기타 포장 공정
12, affixing or printing marks, labels, logos and other like distinguishing signs on products or their packaging	12, 상표, 라벨, 로고 그리고 제품이나 포장에 게시 표시와 같은 기타 표시의 공정되는 인쇄
13, simple mixing of products, whether or not of different kinds	13, 간단한 혼합, 상품이 같은 품목에 속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음
14, simple assembly of parts of articles to constitute a complete article or disassembly of products into parts	14, 상품의 부품으로 완제품을 만든 간단한 조합이나 완제품을 부품으로 간단하게 분해함
15, operations whose sole purpose in to ease port handling	15, 항구 하역의 편리를 위해 행하는 가공이나 처리
16, a combination of two or more operations specified in subparagraphs(1)to(15)	16, 제1항-제15항 중에서 2개나 2개이상의 가공 또는 처리
17, slaughter of animals	17, 동물의 도살

자료: 저자 정리

#### (4) 환적금지(직접운송 원칙)

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운송도중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원산지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가 부여되는 원칙을 말한다. 다만, 운송상의 목적으로 제3국에서 환적한 경우에는 원산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경우 환적과정에서는 운송에 필요한 경미한 작업 이상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중국·칠레 FTA 협정」 원산지 규정 제4장(제27조)과 이 협정에 따른 법령인 「中華人民共和國海關〈中華人民共和國与智利共和國政府自由貿易協定〉項下進口貨物原產地管理辦法」(「중화인민공화국세관 <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 공화국 정부 자유무역협정> 하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 방법」) 제 4조에서도 직접운송 규칙을 규정했다. 본 규정에서는 “일방 당사국으로 부터 수입한 물품은 제3국가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상대방 국가로 수입해야 한다. 다만 아래 상황에서는 제3국가를 거쳐도 직접운송이라고도 간주한다. ①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 ② 해당 물품은 다른 국가나 지역을 거칠 때 하역과 상품이 좋은 상태로 보존하거나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종류의 작업외에 다른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③ 제3국가나 지역에서 판매또는 소비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내용이 있다.

#### (5) 원산지 결정의 특례

원산지결정의 특례란 본래의 원산지규정을 무시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sup>58)</sup> 이러한 특례에 의해 원산지가 결정되는 물품으로는 대체가능 물품, 부속품등이 있다. 「중국·칠레 FTA 협정」 상에 결정특례를 정리하면 아래 [표3-6]과 같다.

58) 尹姬淑, 「한·중·일 FTA 추진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in Promoting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2004년10월, p.63

[표 3-6] 「중국·칠레 FTA 협정」 원산지 규정 결정 특례

세트 상품 <sup>59)</sup>	<General Rule 3 of the Harmonized System>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은 전부다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 세트 상품은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전 세트 상품 가치의 15%이하를 차지하면 당해 세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부속품·예비부품·공구 <sup>60)</sup>	당해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예비부품·공구는 당해 상품 원산지 판정할 때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다. 다만 부속품·예비부품·공구는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① 부속품·예비부품·공구에 대한 송장이 그 상품과 별도로 발부되지 않을 것 ② 부속품·예비부품·공구의 양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해 통상적 수준일 것
간접재료 <sup>61)</sup>	간접재료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는 않는, 또는 상품의 일부분도 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료,안경 등의 간접재료는 원산지 판정에 영향이 되지 않는다.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와 용기 <sup>62)</sup>	2단위,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적용된 소매 판매용 물품의 포장 재료와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된다면 그 자체의 원산지는 당해 상품의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 포장용 재료와 용기는 부가가치 판정기준에 적용할 때, 그 자체의 가치가 고려된다.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sup>63)</sup>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료: 「중국·칠레 FTA 협정」 협정문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59) 「중국·칠레 FTA 협정」 원산지 규정 제4장 제22조 ;

「中华人民共和国海关<中华人民共和国与智利共和国政府自由贸易协定>项下进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중화 인민공화국세관 <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 공화국 정부 자유무역협정> 하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 방법」) 제 12조

60) 「중국·칠레 FTA 협정」 원산지 규정 제4장 제23조 ;

「中华人民共和国海关<中华人民共和国与智利共和国政府自由贸易协定>项下进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중화 인민공화국세관 <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 공화국 정부 자유무역협정> 하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 방법」) 제 13조

61) 「중국·칠레 FTA 협정」 원산지 규정 제4장 제26조 ;

「中华人民共和国海关<中华人民共和国与智利共和国政府自由贸易协定>项下进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중화 인민공화국세관 <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 공화국 정부 자유무역협정> 하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 방법」) 제 15조

62) 「중국·칠레 FTA 협정」 원산지 규정 제4장 제24조 ;

「中华人民共和国海关<中华人民共和国与智利共和国政府自由贸易协定>项下进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중화 인민공화국세관 <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 공화국 정부 자유무역협정> 하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 방법」) 제 14조

이상의 내용은 현행 중국·칠레 FTA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분석을 통해 중·칠레 무역협정에서 나타난 원산지 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을 위주하고 있어서 복잡한 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제2절 한국·칠레 FTA 원산지 결정 기준

한국·칠레 FTA의 체결에 의해 한국은 최초의 특혜원산지 규정을 갖게 되었다. 동협정의 원산지 규정의 기본적인 틀은 「WTO의 원산지에 관한 협정」 「교토협약 부속서K」의 원산지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NAFTA, EU-Chile FTA 등의 특혜 원산지 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양국간의 산업구조, 교역특성 등을 반영하여 마련함으로써 우회수입을 방지하고 한국·칠레간 역내 원산지 상품의 교역활성화,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64) 한국·칠레 FTA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규정은 [표 3-7]과 같이 협정 전문 제 4 장과 부속서4에서 규정되어 있다.

[표 3-7] 한국·칠레 FTA 원산지규정의 내용

조항별	주요내용	조항별	주요내용
제4.1조	정의	제4.9조	간접재료
제4.2조	원산지상품	제4.10조	판매를 위한 포장재와 용기
제4.3조	역내가치포함	제4.11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와 용기
제4.4조	중간재	제4.12조	환적
제4.5조	누적계산	제4.13조	불인정공정
제4.6조	최소허용기준	제4.14조	해석과 적용
제4.7조	대체가능상품과 재료	제4.15조	협의 및 변경
제4.8조	부속품, 예비품 및 공구	부속서4	품목별 원산지규정

자료: 「한국·칠레 FTA 협정」 제 4 장과 부속서4 을 이용하여 저자 재정리

63) 중국·칠레 FTA 협정」 원산지 규정 제4장 제25조 ;

「中华人民共和国海关<中华人民共和国与智利共和国政府自由贸易协定>项下进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 제14조

64) 정인교,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외교상부, 2002년12월, pp.34-37

한국 · 칠레 양국간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FTA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는 완전생산 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있으며, 그 이외에는 보조기준이 동시에 사용된다.

1) 완전 생산기준

한국 · 칠레 FTA 협정문에서 완전생산기준에 적용되는 물품은 주로 가공하지 아니한 농수축산물이나 광산물 등 1차 산품이다.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은 한국 · 칠레 FTA 협정에서 [표 3-8]과 같이 규정된다.

[표 3-8] 완전 생산기준

①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채취된 광물
②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서 정의된 바대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③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④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수렵, 덧사냥 또는 어로로 획득된 상품
⑤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생산물
⑥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 내에서 상기 ⑤호에 해당하는 상품으로부터 생산된 상품
⑦ 일방 당사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해 밖의 해저로부터 또는 해저 하부에서 당사국이나 당사국 인에 의해 채취된 상품
⑧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될 것과 비당사국에서 가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⑨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과 부스러기 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의 생산 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수집되고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품
⑩ 모든 생산 단계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①호 내지 ⑨호에서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부터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생산된 상품

자료: 「한국 · 칠레 FTA 협정」 제4장 원산지 규정 제4.1조 내용을 이용하여 저자 재정리

한국 FTA 교역물품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농산물과 축산물의 완전생산기준이 상이하다. [표 3-8]에서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이라는 규정으로 역외에서 수입한 산 동물을 오랜 기간 사육했다고 하더라도 원산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역외에서 수입한 씨앗·인경·근경·삼수·접수 또는 기타 산 식물의 일부에서 성장한 것은 성장한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인정한다. 둘째, 한·칠레 FTA 원산지 규정에서는 한국과 칠레 양국의 국가영역중 영해범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따라서 완전생산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할 때는 분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 2) 실질적 변형기준

「한국·칠레 FTA 협정」에서는 완전생산기준 이외에 실질적 변형기준을 많이 채택한다. 그 실질적 변형기준은 세계 주요나라와 같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주요)공정기준 세가지 주요기준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보조적 기준으로써 미소(최소)기준, 누적기준, 불인정공정기준, 직접운송기준도 사용된다. 또한 원산지 규정에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도 찾을 수 있다.

### (1) 세번변경기준

「한국·칠레 FTA 협정」 원산지 규정에서 어떤 물품은 세번변경기준에서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품목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특정)가공기준 등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기준을 선택되어 적용된다. 이런 물품은 거의 당사국이 자기의 국내산업의 민감성, 수출촉진의 필요성, 양국간의 교역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물품이다.<sup>65)</sup>

다음으로 한국과 칠레 국가간에 체결한 협정문중 세번변경기준에 대하여 [표 3-9]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65) 馬一男, 「FTA규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2005년6월, p.44), 최홍석, 「한·칠레 FTA 시행과 관세행정의 역할」(관세와 무역, 2004년4월, p.11)

[표 3-9] 한·칠레 FTA 협정의 세번변경기준에 적용된 품목

결정기준		적용품목	
단일기준	2단위	제1류-제10류(농수산물), 제12-14류및제16류(농수산가공품), 제25류-제26류(광물), 제46류(조물제품), 제49류(인쇄물), 제54류(인조필라멘트), 제56-제58류(특수직물), 제60류(편물), 제69류(도자기제품), 제82류(비금속제품)등 25개 류에 속한 모든 품목과 연료, 고무제품, 가죽제품, 섬유 사, 귀금속, 시계 완제품, 대부분의 침구류 등	
	4단위	제21류(조제식품), 제33류(정유, 화장품), 제34류(비누, 왁스), 제35류(단백질계물질), 제37류(사진영화재료), 제44류(목재), 제45류(코르크), 제47-48류(종이), 제66류(산류, 지팡이), 제84류 기계류의 부분품목, 제86류(궤도차량), 제88류(항공기), 제97류(예술품, 골동품)등 13개류에 속한 모든 품목과 광물성 연료, 의료용품, 화학제품, 직물, 유리제품, 귀금속제품, 비금속제품 등	
	6단위	합성유기착색제, 불꽃제품, 성냥, 지방산, 조제점결제, 철강체인, 연·아연, 비금속의 기타제품, 쌍안경, 망원경등	
선택	2단위 or 부가가치	81류(기타 비금속, 서멘트), 이들의 제품 중에 속이고 있는 8106·00, 8110·10, 8110·90 등	
	4단위 or 부가가치	제28류(무기화학품, 무기화합물등), 제29류(유기화학품), 제30류(의료용품)중의 30·02, 제32류(유연, 잉크등)중의 대부분,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38류(각종 화학공업 재산품39·09-38·11/38·15-38·17)	
	6단위 or 부가가치	제90류에 속하고 있는 9018·39	
	2단위 or 조립	냉장고(8418·10-8418·50)	
조합	세 번 경 + 부 가 치	2단위+부가가치	제11류(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전분·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제15류(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4단위+부가가치	1704(설탕과자), 1806(초콜릿등), 제19류(곡물·분·전분등의 제조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31류(비료)중의 3102-3105, 제64류(신발류, 각반등) 등등
		6단위+부가가치	제73류(철강의 제품)에 속이고 있는 7321·11-7321·83, 제84류(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등)중에 속하고 있는 8401·10 등
	세번변경+주요공정		제61류(편물의류), 제62류(직물의류), 제63류(섬유제품) 2단위 세번변경+제단(편직)+봉제
	세번변경+원사재+주요고정		제61류 및 제62류에 얇은 안감을 사용하는 경우 2단위+원실/원사+결단+봉제

자료: 「한·칠레 FTA 관세특례 법령집」, 「한·칠레 FTA 협정」(부속서4) 내용을 저자 재정리

[표3-9]를 통해 분석하여 볼때, 「한·칠레 FTA」 세번변경기준은 「중·칠레FTA」 세번변경기준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한·칠레 FTA」 협정에서 세번변경기준은 2단위, 4단위, 6단위를 많이 사용하므로써,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더 편리하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농수산물의 경우 엄격한 2단위 변경이 많으며, 공산품의 경우 4단위, 6단위 변경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엄격한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병행되고 있다. 예컨대 제11류(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전분·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와 제15류(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의 두 품목에 속하는 물품은 모두 “다른 2단위 세번변경 및 역내부가가치가공제법 사용시 45%이상, 직접법 사용시 30%이상인 경우에만 원산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2) 부가가치기준

「한·칠레 FTA」 부가가치를 산정할 때, 공제법(Build-down method)과 직접법(Build-up method)을 사용한다. 품목별 부가가치비율에 있어서, 대부분 공제법을 사용하면 45%이상, 직접법을 사용하면 30%이상이다. 그러나 제20류의 과실혼합물과 혼합주스 등은 공제법 80% 이상이어야 원산지를 인정한다. 또한 협정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을 세번변경기준이나 주요공정기준과 조합하여 사용할 때도 있다. 다음은 공제법과 직접법의 공식이다.

방식1: 공제법

$$RVC = \frac{AV - VNM}{AV} \times 100\%$$

방식2: 직접법

$$RVC = \frac{VOM}{AV} \times 100\%$$

여기서,

RVC: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 비율

AV: 조정가격<sup>66)</sup>

VNM: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VOM: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

### (3) 특정(주요)가공결정기준

주요공정기준은 개별 물품별로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생시켜주는, 기술적인 제조 또는 가공작업을 기술한, 일반적인 명세표를 사용하여 지정된 가공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기준의 실질적인 적용은 제조·가공 공정의 리스트에 의하며, 리스트는 “원산지를 인정하는 특정한 공정”을 지정하는 적극적인 방식과 “특정 공정만으로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소극적인 방식이 있다. 다시 말하면, 주요공정기준은 지정된 생산공정 수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므로 객관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생산공정을 왜곡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한·칠레 FTA] 협정에서 특정공정결정기준은 직물(제50류 내지 제60류)과 의류(제61류, 제62류), 방직용 섬유제품(제63류)에 한하여 재단·편직·조립 등의 주요공정을 역내국에서 수행할 것을 적용한다.

### 3) 보조적 원산지 결정기준

#### (1) 누적기준

[한·칠레 FTA] 협정에서도 양자누적 방식을 채택했다. 일방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나 재료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상품에 포함되는 경우 그 상품이나 재료는 타방 당사국의 영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했다. 그 외에, 이 협정에서는 당해 상품에 포함된 재료가 양 당사국영역에서

66) 조정가격은 협정에서는 “역내가치포함 비율 공식 및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목적상 관세평가협정 제1조 내지 제8조, 제15조 및 이들 조항의 주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필요시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미 제외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가격을 말하며, 필요시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미 제외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비용, 부과금 및 지출금을 고려대상인 상품의 관세가격으로 부터 제외하여 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러한 비용, 부과금 및 지출금은 모든 수출국은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을 국제적으로 수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운송, 보험 및 관련서비스 비용, 부과금 또는 경비를 말한다” 고 제정한다.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누적할 경우 그 자료의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할지 여부에 대해 설명했다. 그 경우 그 재료의 생산은 그 후자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했다.

(2) 최소(미소)결정기준

「한·칠레 FTA」협정에서 규정된 최소결정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67)</sup>

첫째,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상품 조정가격의 8%이하인 경우에, 해당 상품은 협정의 부속서3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둘째, 만약 동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1류-제24류에 규정된 상품들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소호가 해당 상품의 소호량 다르면, 위의 최소결정기준은 제1류-제24류 상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동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50류 내지 제63류에서 규정된 상품중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그 상품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섬유, 상품가 부속서 4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산지 제품이 아니라고 판정되는 경우에도 그 구성요소에서 차지하는 모든 섬유나 방사의 총 무게 비율이 그 구성요소의 총 무게의 8% 이하일 경우에는 원산지로 간주한다.

[표3-10] 한국·칠레 FTA 미소기준

구분		한국·칠레 FTA
일반물품 가격기준		8% 이하
섬유제품 중량기준		8% 이하
농수산물	기초농수산물(제1류-제14류)	8%+6단위
	가공농수산물(제15류-제24류)	8%+6단위

자료: 「한국·칠레 FTA」협정문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67) 「한·칠레 FTA」협정 제4장 원산지 규정, 제 4:6조

### (3) 직접운송원칙

「한·칠레 FTA 협정」 원산지 규정 중에서도 직접운송원칙이 도입되어 있다. 하역, 재선적, 상자포장, 포장과 채포장 또는 상품을 좋은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까지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다른 종류의 작업 이외의 추가적 생산이나 작업을 거친 경우 또는 제3국의 영역내의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지 않은 경우는 당해 물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한·칠레 FTA 협정에서는 전시회에 참가한 후 다시 판매하는 전시 물품에 대한 규정이 없다.

### (4) 불인정기준

세계 주요 FTA 협정과 같이 한·칠레 협정에서도 운송·보관·포장·선별 등을 위한 경미한 작업 또는 공정 활동만 거친 경우, 당해 물품은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칠레 협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sup>68)</sup>

① 상품은 다음의 이유만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운송 또는 저장 목적상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존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나. 선적이나 운송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다.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이나 전시에 관계된 작업, 공정

② 제1항의 작업이나 공정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환풍, 통풍, 건조, 냉장, 냉동.  
나. 세탁, 세척, 체질, 진동, 선택, 분류 또는 등급화, 선별, 혼합, 절단,  
다. 탈피, 탈각 또는 박편, 탈곡, 빼제거, 분쇄나 압착, 연결화  
라.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를 제거, 기름 도포, 녹 방지나 그 밖의 보호재료 도포  
마. 시험이나 측정, 대량 선적의 분류, 포장 상태로 조립, 표시부착, 제품이 나 포장의 상표 부착, 특유의 표시, 포장, 포장해체나 채포장.  
바.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에 의한 희석  
사. 상품의 단순조립, 세트구성  
아. 염화, 가당.

68) 「한·칠레 FTA 협정」 협정문

자. 동물의 도살

차. 분해, 그리고

카. 이러한 작업 또는 공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

(5)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

한·칠레 협정에서도 결정기준의 특례가 있다. 그 내용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 [표3-11]와 같다.

[표3-11] 원산지 결정기준의 특례

종 류	내 용
대체가능 상품과 재료 <sup>69)</sup>	<p>대체가능 상품이란 상관행상 서로 호환가능한 것으로서 물품의 특성·기능·구조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p> <p>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재료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특정 대체가능한 재료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나, 통일규칙에 규정된 재고관리기법에 기초해서 판정된다. 그리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상품이 혼합되어 동일한 형태로 수출되는 경우, 판정은 통일규칙에서 규정한 재고관리기법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일단 재고관리기법에 의거하여 판정이 내려지면, 전체 회계연도를 통해 이 기법이 사용된다.</p>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sup>70)</sup>	<p>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에 대한 송장이 그 상품과 별도로 발부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양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해 통상적 수준일 경우, 그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당해 상품의 원산지 판정의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해 상품이 역내가치포함 요건의 대상이 될 경우, 사안에 따라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p>
간접재료 <sup>71)</sup>	<p>간접재료는 생산되는 장소와 무관하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재료로 간주된다.</p>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sup>72)</sup>	<p>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의 원산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단지 당해 상품이 역내가치포함 요건의 대상이 될 경우, 사안에 따라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p>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와 용기 <sup>73)</sup>	<p>당해 상품의 원산지 결정 요소가 되지 않는다</p>

자료: 「한·칠레 FTA」 협정문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 제3절 양국 원산지 결정 기준의 비교

제1절과 제2절을 비교·분석하면 양국 원산지 규정 기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양국의 원산지 결정 기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는 동시에 그것을 나타낸 이유도 시찰하겠다.

#### 1) 완전생산기준 비교 · 분석

앞의 양국의 완전생산기준을 비교하면 양국의 완전생산 기준은 대부분이 같고 일부분만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표 3-12], [표 3-13]과 같다.

---

69) convention article 4.7 및 시행규칙 제1조, 제10조

70) convention article 4.8 및 시행규칙 제11조

71) convention article 4.9 및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72) convention article 4.10 및 시행규칙 제9조

73) convention article 4.11 및 시행규칙 제9조

[표 3-12] 양국 완전생산 기준의 유사점

	종류	중국·칠레 완전 생산 기준	한국·칠레 완전 생산 기준
유사점	광물, 식물	1.중국 또는 칠레 영토나 해저에서 채취된 광물 2.중국 또는 칠레 영역내에서 수확된 식물이나 식물상품	①,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채취된 광물 ②,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서 정의된 바대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살아 있는 동물	3.중국 또는 칠레 영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③,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수렵, 딛사냥,어로로 획득한 상품	5.중국 또는 칠레 영역내에서 수렵, 딛사냥 또는 양국 내륙수역에서 어로로 획득된 상품 6.중국 또는 칠레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로로 획득한 상품과 가타 상품	④,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수렵, 딛사냥 또는 어로로 획득된 상품
	영해외 해저로부터 획득한 상품	11,일방 당사국이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를 탐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해 밖의 해저로부터 또는 해저 하부에서 당사국에 의해 채취된 상품	⑦,일방 당사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해 밖의 해저로부터 또는 해저 하부에서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해 채취된 상품
	폐기물과 부스러기	9.중국이나 칠레 영역에서 수집되고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품 10.중국이나 칠레 영역내에서의 생산 또는 수집되고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품	⑨,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과 부스러기 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의 생산 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수집되고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품
	가공상품	12, 1호 내지 11호에서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부터 일방 또는 양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생산된 상품	⑩,모든 생산 단계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①호 내지 ⑨호에서 언급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부터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생산된 상품

자료: 「중·칠레 FTA 협정」 과 「한·칠레 FTA 협정」 원산지 규정을 이용하여 저자 재정리

[표 3-13] 양국 완전생산 기준의 차이점

	종류	중국·칠레 완전생산 기준	한국·칠레 완전생산 기준
차이점	당사국에서 양육하기만 하면 원산지 자격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경우에는 완전하게 획득한 물품이라고 간주한다. (상관 규정: 4, 중국 또는 칠레 영역내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한·칠레 협정에서는 살아있는 동물이 반드시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내에서 <b>출생</b> 및 사육된다고 규정했다 (완전하게 획득한 물품규정 중의 ③)
	영역의 활동 범위 차이	7, 일방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b>배타적 경제수역밖의 바다</b> 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생산물	⑤,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b>영역 밖의 바다</b> 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생산물
	우주로부터 획득한 상품의 경우 원산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규정 없음	⑧, 당사국이나 당사국 인에 의해 획득될 것과 비당사국에서 가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자연을 채취한 행위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가에 대한 여부	그 행위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채취한 권리 실행자 누구인지 잘 분별하지 않는다.	채취한 권리 실행자 누구인지 잘 분별하고 있다.
	가공선의 국적	8, 일방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 내에서 .....	⑥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 내에서...

자료: 「중·칠레 FTA 협정」 과 「한·칠레 FTA 협정」 원산지 규정을 이용하여 저자 재정리

### (1) 완전생산기준의 유사점에 대한 분석

칠레와 체결한 양국의 완전생산 기준을 비교하면, 양국 협정에서 완전생산 기준 대부분이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각국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도 다를 수 있다. 이는 세계에서 여러 국가에 적합한 완전히 통일된 원산지 규정을 제정하기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 물품 교역 중에 발생한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나라가 협상한다면 유사한 원산지 규정의 틀이 이루어질 수 있다.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73년5월 세계 협력기구(CCC)의 주도로 체결된 「교토협약」부터이다. 동 협약 부속서에는 원산지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원칙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후 이 부속서는 1999년 7월 개정된 교토협정의 특별부속서K(Specific Annex K)로 수정되었다.<sup>74)</sup> 이 부속서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원산지 판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이다. 특정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은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여기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이란 [표 3-14]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sup>75)</sup>.

또한 중국 정부는 1983년 세계관세 기구(WCO)에 정식 가입했다.<sup>76)</sup> 그리고 2000년 6월 15일에는 중국정부가 개정<교토협약>에서 서명했다.<sup>77)</sup> 한국 정부는 2003년 2월 19일 14번째로 가입하였으며 2006년 2월 3일부터 개정 교토협약이 발효되었다.<sup>78)</sup> 이렇게 보면 「중·칠레 FTA 협정」 완전생산기준과 「한·칠레 FTA 협정」의 완전생산기준이 대부분 유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교토협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증된다.

74) 尹姬淑, 「한·중·일 FTA 추진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한 연구」, 2004.10, p.40

75)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Specific Annex K). Rules of Origin, 1999

76) 中国海关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3708/info4525.htm>

77) 2000年06月17日 《人民日报》 第三版 <http://www.people.com.cn/GB/paper464/817/107402.html>

78) 개정 교토협약은 40개국 이상 가입한 발로부터 3개월 후 발효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5년 11월 3일 인도가 40번째 가입을 계기로 발효하게 되었다. 2006년 1월말 현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42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표 3-14] 완전생산품 인정기준

a, 당해 국가의 토양, 영해 또는 해저에서 채취된 광물성 생산품
b, 당해 국가에서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성 생산품
c, 당해 국가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산 동물
d, 당해 국가에서 산 동물로부터 얻은 생산물
e, 당해 국가에서 행해진 수렵 또는 어로로부터 얻은 생산품
f, 당해 국가의 선박이 해양어업으로 획득한 생산품 및 해양에서 취득한 기타의 생산품
g, 상기 f 항이 정하는 종류의 생산품만을 가지고 당해 국가의 공장선상에서 얻어진 생산품
h, 당해 국가의 영해 밖 해저의 토양 또는 하층토에서 채취된 생산품으로, 단 당해 국가가 그 토양 또는 하층을 이용할 독점권이 있어야 한다.
i, 제조 및 가공작업에서 생신 부산물과 폐기물, 그리고 중고품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수립되고 원자재의 회수에만 적합한 것
j, 당해 국가에서 상기 a항 내지 i항에서 언급된 생산품에 의해서만 생산된 물품

자료: 尹姬淑, 「한·중·일 FTA 추진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한 연구」 인용

(2) 차이점에 대한 분석

「중·칠레협정」 완전생산기준 과 「한·칠레 FTA 협정」 의 완전생산기준은 4가지 차이점이 있다.

가. 살아 있는 동물과 가공선박 국적

「중·칠레 FTA 협정」 완전생산 기준에서는 “중국 또는 칠레 영역내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으로부터 획득한 상품”이라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동물이 당사국에서 출생하지 않아도 된다. 수입한 동물을 일정기간에 양육하면 그 동물의 양육국이 원산지 국가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한·칠레 FTA 협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며 원산지 국가로 규정되는 경우는 반드시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양육한 동물이다. 또한 「중·칠레 FTA 협정」에서는 일방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기만 하면 그 가공선박의 국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한국·칠레 FTA 협정」에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한다. 가공선박의 국적을 인정할 때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할 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국기도 계양해야 한다. 농수산업은 한국의 민감 산업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많은 보호를 요한다. 따라서 중국보다 한국은 이 산업 분야에 대해 보다 더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나. 해저 또는 해저 하부로부터 자연물을 채취한 행위자에 대해 불명확한 규정

「한·칠레 FTA 협정」 원산지 기준에서는 “일방 당사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영해 밖의 해저로부터 또 해저 하부에서 당사국이나 당사국 국민에 의해 채취한 상품”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비해 「중·칠레 FTA 협정」 완전생산 기준에서는 채취자에 대한 판정이 너무 모호하다. 중·칠레 협정에서는 단지 채취권리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런 채취권리는 개인이나 정부등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불명확한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향후 중·한 간 통상 마찰이 야기될 가능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다. 우주로부터 획득한 상품의 원산지 판정

「한·칠레 FTA 협정」 완전생산 기준에서는 우주로부터 획득한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중·칠레 FTA 협정」 완전생산 기준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다. 전 세계에서 이런 규정을 포함한 FTA 협정은 「한·칠레 FTA 협정」 외에 NAFTA만 있다<sup>79)</sup>. 이는 한국정부가 중국정부보다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영역외 활동범위에 대한 규정

「중·칠레 FTA 협정」과 「한·칠레 FTA 협정」에서는 영역외 활동범위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한국·칠레 협정에서는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계양한 선박에 의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생산물”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달리 중국·칠레 협정에서는

79) 尹姬淑, 「한·중·일 FTA 추진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한 연구」, 2004.10, p.70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생산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역외 활동범위에 대해 두 협정간에는 “영역밖” 과 “배타적 경제수역밖의 바다” 라는 표현 차이가 있다. 사실상, 중국, 한국, 칠레 세 국가는 영해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중국과 한국 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지 않고 12해리 범위까지”라고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칠레의 영해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80)</sup> 즉, 한국 수산물의 원산지 인정 지역에 비해 칠레의 원산지 인정지역은 188해리로 증가된다. 중국·칠레의 협정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이외”로 정하므로 이런 문제가 없다.

## 2) 실질적 변형기준 비교 · 분석

### (1) 실질적 변형기준 비교·분석

「중 · 칠레 FTA 협정」 과 「한·칠레 FTA 협정」 의 실질적 변형기준을 비교·정리하면 [표 3-15]과 같다. [표3-15]를 보면, 「중국 · 칠레 FTA 협정」 실질적 변형기준과 「한국 · 칠레 FTA 협정」 실질적 변형기준의 유사점 및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80) 中华人民共和国政府关于领海的声明(1958年9月4日),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门户网站, [http://www.gov.cn/test/2006-02/28/content\\_213287.htm](http://www.gov.cn/test/2006-02/28/content_213287.htm)

[표 3-15] 실질적 변형기준의 비교

종류		한국	중국
단일 기준	세번변형기준	2단위 와 4단위	2단위 4단위 6단위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45%이상 직접법: 30%이상	특정 물품: 공제법 50%이상
		제20류의 과일, 혼합물과 혼합주스등: 공제법: 80%이상	일반 물품: 공제법 40%이상
특정가공기준 재단,편직,조립	직물(50류-60류), 의류(61,62), 방직용 섬유제품(63류)	없음	
조합	세 번 변 경+ 부 가 가 치	2단위+부가가치 4단위+부가가치 6단위+부가가치	없음
		세 번변경+주요공정	없음
		세 번변경+원사재+주요고정	없음
선택		2단위 or 부가가치	없음
		4단위 or 부가가치	없음
		6단위 or 부가가치	없음
		2단위 or 조립	없음

자료: 「중·칠레 FTA」 과 「한·칠레 FTA」 의 협정문의 내용을 이용하여 저자 정리

가. 실질적 변경기준의 유사점:

「중국 · 칠레 FTA 협정」 실질적 변형기준과 「한국 · 칠레 FTA 협정」 실질적 변형기준은 모두 세번변형기준(2단위, 4단위)그리고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 나. 실질적 변경기준의 차이점

첫째, 「중국·칠레 FTA 협정」 실질적 변형기준은 거의 “한 품목이 한 기준” 등의 형식으로 채택된다. 그러나 「한국·칠레 FTA 협정」 실질적 변형기준은 하나만 채택하거나 2개 이상 선택·조합적으로 채택할 때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칠레 FTA 협정」 실질적 변형기준은 「중국·칠레 FTA 협정」보다 더 복잡하고 엄격하다. 「한국·칠레 FTA 협정」 실질적 변형기준의 특징은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장점은 품목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더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산지 규정의 국내 산업 보호기능 또한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중국 국내 원산지 결정 기준의 문제는 화물 원산지를 판정할 때 화물에 따라 다른 원산지 판정기준을 채택하지 않고 너무 단일한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sup>81)</sup>

단점은 기준이 너무 복잡해서 통관할 때 기업에게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산지 규정을 고려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할 경우 기업은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너무 복잡하면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이 너무 엄격하고 복잡하여 관세혜택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너무 복잡하면 업무처리량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sup>82)</sup>

둘째, 「중국·칠레 FTA 협정」 실질적 변형기준 중의 부가가치 포함을 산정방법은 한가지이다. 그리고 그 부가가치 포함율이 한·칠레의 것보다 좀 낮다. 그러나 「한·칠레 FTA 협정」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포함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이다. 그리고 특정품목은 아주 높은 부가가치 포함율을 충족시켜야 비로소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셋째, 「중국·칠레 FTA 협정」에서는 특정공정기준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칠레 FTA 협정」의 특정공정기준은 많이 사용된다. 특히 의류품목의 사용빈도가 높다.

## (2) HS품목별에 따른 비교·분석

이 논문에서는 그 교역 품목의 중요성과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입각하며

81) 张琳, 「原产地规则探析—兼评我国新<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政治与法律, 2006年第1期., p.113

82) 최장우, 「한-FTA 체결국간 원산지제도 비교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2007.12, p.346

한·칠레, 중·칠레, 한·중 무역의 유사한 품목, 즉 제1-14류(산 동물 및 동물성 생  
 산품, 그리고 식물성 생산품), 제50-63류(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  
 84-85류(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등), 제86-89류 (차량·항공기·선박과  
 그 수송기기 관련품) 4가지 품목에 대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비교하였다. 즉 농수  
 산물, 기계·전기 상품, 운송설비, 섬유상품에 관련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가. 제1-14류 주요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표 3-16] 중·한 기 체결 FTA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제1-14류 품목)

분류	중국·칠레 FTA	한국·칠레 FTA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1-14류	제1-10류, 제12류, 제14류
4단위 OR 4단위세번변경기준	없음	없음
2단위 + 부가가치기준	없음	제11류 2단위+역내부가가치 (공제법 45%, 직접법 30%)
예외:	없음	제13류(13.01-13.02)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데 2939.11의 양귀비 줄기 농축물은 제 외함

자료: 「중국·칠레 FTA」, 「한국·칠레 FTA」 협정문의 부속서 내용을 재정리

위의 표와 앞의 완전생산기준 비교 결과를 통해 「한국·칠레 FTA 협정」에서  
 는 농수산업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칠레 FTA 협정」에서는 농수산품에 대해 2단위 세번변경기준외에 다른  
 결정기준을 규정하지 않았다. 양 협정의 결정기준이 다른 이유는 한국·중국·칠레  
 의 농업 부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1970년말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빠르게 공업화를 진전시켜왔다. 그러

나 인구의 6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농촌경제는 아직까지도 국민경제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기본적인 농업지표를 중심으로 중·한 양국의 경제지표를 정리한 [표3-17]를 보면, 중·칠레, 한·칠레 FTA 체결 전 2002년의 농업 상황을 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중국의 약 10배가 넘으며, 전체 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약 4%, 중국은 약 26%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7] 중국과 한국의 주요 경제 및 농업 지표(2002년)<sup>83)</sup>

	중 국	한 국
GDP(10억 달러)	1,265.6	476.6
1인당 GDP(달러)	(988)	(10,004)
농림어업 GDP (10억 달러)	330.9	19.7
농림어업 비중(%)	(26.1)	(4.1)
인구(백만명)	1,284.5	47.9
농가인구와 비중(%)	782.4(60.9)	3.53(7.5)
국토면적(천km <sup>2</sup> )	9,598	99.5
경지면적과 비중(%)	1,241(12.9)	18.5(18.5)
호당경지면적(ha)	(0.51)	(1.46)
총수출액(10억 달러)	325.6	162.5
농수산물수출액	(14.5)	(1.9)
총수입액(10억 달러)	295.2	152.1
농산물수입액	(8.8)	(10.2)

자료: 한국농림부(농림업 주요토계, 2003년), 중국인민은행(통계연보), 중국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2003) 정리

농가인구 비중을 보면 한국의 경우 7.5%(350만 명)인 반면, 중국은 60.9%(7억 8천만 명)이다. 호당 경지면적을 살펴보면 한국 농가의 경지면적이 중국보다 세 배정도 크지만 농산물교역량은 중국에 비해 다소 작다. 농산물교역을 보면, 한국은 2002년 농산물 수출이 19억 달러인데 반해, 중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한국의 7.6배에 달하는 145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 약 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농산물 부문에서 57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한국 농수산품의 가격보다 중국 농수산품의

83) 卞蓮花, 「韓·中 FTA 締結 妥當性과 推進方向에 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2006.12, p.61

가격은 압도적인 우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비교를 통해 농업부문에서 한국보다 중국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중국, 한국의 농수산업 비교를 통해 중국보다 한국의 농수산업이 열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칠레와 협정을 체결할 때 농수산업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채택하였다. 중국은 농수산업 부문 모두에서 경쟁력이 있으므로 협정을 체결할 때 이 부분에 대해 한국처럼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원산지 결정기준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는 중·한 두 국가의 농수산업의 경쟁력 수준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제50-63류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비교 결과는 [표3-18]로 설명된다. [표3-18]에 볼 때, 「한국·칠레 FTA 협정」에서는 제50-63류 섬유상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여러 가지 종류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일 원산지 결정기준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기준을 조합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제50류 견”에서 50.01-50.03 품목은 세번변경 2단위에 적용되고 50.07 품목은 4단위에 적용된다. 그리고 제62류에 속한 620119 품목은 2단위 세번변경 및 재단과 봉제 또는 기타 조립공정에 충족해야 원산지를 인정해 준다. 이와 같이 해서 제3국의 우회수입을 피하고 국내 섬유 산업 부문을 보호할 수 있으며, 산업조정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 달리 「중국·칠레 FTA 협정」에서는 단지 부가가치 기준만 규정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 양국이 섬유상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다르게 처리하는 이유는 양국의 섬유 산업 발전 수준과 경쟁력에 입각하여 찾을 수 있다.

[표 3-18] 중·한 기 체결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제50-63류 주요 품목)

분류		중국·칠레 FTA	한국·칠레 FTA
단일 기준	세번변형기준	없음	2단위 52.01-52.07 (54.01-54.05 또는 55.01-55.07로 부터의 변경 제외) 54.01-54.07 55.01-55.11 (52.01-52.03등으로 부터의 변경 제외) 제59류 60.01-60.06 (53.11-54류등으로 부터의 변경 제외) 4단위 52.08-52.12 (51.06-51.10등으로 부터의 변경 제외) 54.08 (52.01-52.03등으로 부터의 변경 제외) 55.12-55.16 (54.01-54.04등으로 부터의 변경 제외) 제60류
	부가가치기준	52.04,52.05,52.06,52.08등 제54류, 제55류, 제59류, 제60류 제61류, 제62류 특정 물품: 공제법 50%이상 제52류의 일부분 일반 물품: 공제법 40%이상	없음
	특정가공기준 재단,편직,조립	없음	없음
조합	세번변경+ 부가가치	없음	없음
	세번변경 +주요공정	없음	제61류, 제62류, 제63류의 대부분
	세번변경 +원사재 +주요고정	없음	제61류, 제62류

자료: 「중국·칠레 FTA」, 「한국·칠레 FTA」 협정문의 부속서 내용을 저자 재정리

다. 제84-85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속품 등에 대한 비교

제84-85류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교 결과는 다음 [표 3-19]과 같다. 중국·칠레 FTA협정에서는 부가가치 기준만이 사용된다. 그러나 한국·칠레 FTA 협정에서는 중국보다 더 복잡한 원산지 기준을 규정했다. 즉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일정 부가가치 함유율도 포함해야 한다.

전자 산업을 예로 보면, 중국은 1990년대 초반 정부의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전략에 의해 전자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거대한 소비시장,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소프트웨어 기술 잠재력을 바탕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1980-1990년대 전자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구조전환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반도체, 휴대용전화기, 디스플레이 등은 최근 들어 세계적인 위치를 점유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과 한국 양국의 전자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2004년까지 미국에 이어 각각 세계 3위, 4위 생산규모를 가지게 되었다. 중국과 한국 전자산업의 기술수준을 원천기술, 응용기술, 설계기술, 제조기술, 디자인, 브랜드 인지도, 시정 분야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한국, 중국 순으로 기술수준이 높다. 그러나 제조기술은 2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기술격차 정도를 제품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TFT-LCD, PDP, 디지털 평판 TV에서, 중국은 데스크톱 PC, 백색가전, 아날로그 TV에서 가장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84)</sup>중국보다 한국의 전자 산업이 우위에 있고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수 산업보다 좀 더 원활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채택했다. 중국은 전자 산업이 많이 발전했지만 일부 품목이 아직 민감 산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기준 포함율을 높게 정했다. 중국과 칠레 협정문에서는 85.16(전자 제품) 품목의 부가가치 포함율이 50% (공제법) 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해 준다고 규정했다.

84) 李昌在,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2005년, PP 68-69

[표 3-19] 중·한 기 체결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제84-85류 품목)

분류	중국·칠레 FTA	한국·칠레 FTA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대부분 4단위, 6단위 세 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같이 적용된다. 공제법: 45%이상 직접법: 30%이상
부가가치기준	공제법 50%이상 84.31, 84.50, 84.51, 84.74, 84.81, 84.18. 84.19, 84.21, 84.24, 84.26, 84.29, 85.09, 85.16, 85.44 공제법 40%이상 위의 것 이외	없음
세번변경기준4단위	없음	85.03, 8504.90등

자료: 「중국·칠레 FTA」, 「한국·칠레 FTA」 협정문의 부속서 내용을 제정리

라. 제86-89류 차량·항공기·선박과 그 수송기기 관련품

제86-89류 차량·항공기·선박과 그 수송기기 관련품에 대한 분석은 다음 [표 3-20]과 같다. 중국·칠레 협정문에서는 자동차 등 산업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칠레 협정문에서는 부가가치 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한다. 어떤 품목에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중국보다 한국·칠레 협정문에서는 더 원활한 결정기준을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표 3-20] 중·한 기 체결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제86-89류 품목)

분류	중국·칠레 FTA	한국·칠레 FTA
부가가치 기준	제86-89류 공제법 40%이상	87.01-87.05 공제법: 45%이상 직접법: 30%이상
세번변경기준	없음	86류, 88류, 89.08 4단위 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OR부가가치기준	없음	8707-8716 8901-8907

자료: 「중국·칠레 FTA」, 「한국·칠레 FTA」 협정문의 부속서 내용을 제정리

이상 품목별에 따른 양국 원산지 결정기준의 차이점을 분석했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과 한국의 산업구조와 산업경쟁력의 차이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한국의 비교우위가 가지고 있는 상품은 보통 자동차, 과학 공업등과 같은 과학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집중된다. 반대로 중국은 농수산물, 광물, 가공공업등과 같은 과학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문에 집중된다.<sup>85)</sup>

### 3) 보조적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 분석

「중국·칠레 FTA협정」과 「한국·칠레 FTA협정」의 보조적 원산지 결정기준을 비교하면, 「중국·칠레 FTA협정」에서는 직접운송기준 중에서 전시 상품에 대해 자세히 결정하는데 「한국·칠레 FTA협정」에서는 이런 방면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 이런 차이점의 발생은 정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국·칠레 FTA협정」에서는 대체물품 규정을 두고 있는데, 중국·칠레 현장에서는 이런 것이 없다. 실제로 호환이 가능한 대체물품의 경우 역외 물품과 역내 물품을 섞어서 제품을 생산한 경우 물리적인 구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85) 陈泓, 「建立中日韩自由贸易区的制度框架分析与路径选择」, 2005년, p.24

를 대비하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 규정 역시 원산지  
규정의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다.



## 제Ⅳ장 중·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정책적 畵意

### 제1절 중·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정책적 방향

원산지규정은 그 내용에 따라 FTA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FTA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FTA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관세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을 어떠한 판정기준에 따라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중·한 FTA의 원산지 규정을 협상할 때, 본 논문에서는 더 발전적인 협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안한다.

첫째, 중·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각 나라의 경제발전, 특히 산업구조의 환경에 맞아야 한다. 그 이유는, 지역협정이 지역 내 경쟁력 강화, 기술진보, 투자 촉진 등 동태적 경제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적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적당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중·한 양국이 다 민감 산업이 지니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기술미약적인 제조업, 한국의 농업, 일부분 산업이 민감 산업이다. 따라서 원산지 결정기준 전에 각국의 경제 구조, 민감 산업, 양국의 무역 구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 “win-win” 효과가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이루어기를 바란다.

둘째, 제3국가의 우회무역을 방지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있어야 한다. 만약 중국과 한국 간 FTA 협상이 체결된다면 양국의 관세를 큰 폭으로 조정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3국가는 혜택을 받기 위해 우회무역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FTA 체결에 따른 혜택을 제3국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당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셋째, 중·한 양국의 무역 효과를 최대화 하고 통상 산업과 상관 국가 정부 부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간단·명료화해야 한다. 원산지 결정기준이 복잡할수록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련된 업무량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무역 비용 또한 증가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한편, 원산지

규정을 잘못 적용할 경우 기업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규정이 복잡하면 정부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다.

## 제2절 중·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틀(FRAMEWORK)

### 1) 완전생산기준

중국과 한국이 체결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살펴본 결과, 한국 정부는 자국의 민감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업 분야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보다 더 엄격한 편이다. 그러나 중국이 체결한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서는 상대국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중국과 칠레 협정문에서는 사육지나 출생지 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원산지를 인정한다고 규정하는 반면, 중국·파키스탄 협정문에서는 사육지와 출생지 같은 나라이어야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중국은 자기 나라의 농수산품을 더 많이 수출하도록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중·칠레, 한·칠레 2개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을 살펴본 결과, 양국의 완전생산기준에서 영역, 채취자에 대해 모호한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양국이 완전생산기준을 정할 때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특히 중·한 양국 간에는 아직 동해, 황해의 영해분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잘못 정하면 양국 간의 무역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사실상 영해분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본 논문에서는 영해분쟁이 있는 지역을 피하도록 명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체결하기를 제안한다.

양국이 교토협약에서 영향을 받아 완전생산기준의 대부분이 유사한 점을 통해 앞으로 중·한 양국이 완전생산기준을 정할 때 다음 [표 4-1] 형식으로 하면 중·한 농업보호와 양국 간의 사전분쟁이 해결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표 4-1] 중·한 FTA 완전생산기준의 틀(framework)

① 일방적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영해 상황: 분쟁이 없는 영해 내)에서 채취된 광물
②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서 정의된 바대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영해 상황: 분쟁이 없는 영해내)내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③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출생이나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④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렵, 낚시 또는 어로로 획득된 상품
⑤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에서 잡힌 어획물 및 그 밖의 생산물
⑥ 일방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 내에서 상기 ⑤호에 해당하는 상품으로부터 생산된 상품
⑦ 일방 당사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영해 밖의 해저로부터 또는 해저 하부에서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해 채취 된 상품
⑧ 당사국이나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될 것과 비당사국에서 가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⑨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과 부스러기 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생산 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집되고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중고품
⑩ 모든 생산 단계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①호 내지⑨호에서 어업 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부터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상품

## 2) 실질적 변형기준

중·한 양국이 각각 체결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세번변경기준을 위주로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부가가치기준을 선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 문헌을 보면, 어떤 연구자는 중국과 한국 양국이 선호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중·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이 마련될 때, 어떤 원산지 결정기준을 주요결정기준으로 채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한 FTA 협상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논술한 중·칠레 FTA에 한해 매우 명료하고 간단한 세번변경기준을 보충하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뉴질랜드 국가와 체결한 협정문을 살펴보면,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세번변경기준을 주요기준으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앞으로 중국과 한국 양국이 FTA 체결시, 어떤 원산지 결정기준을 주요결정기준으로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산지 결정기준 방식에 관한 협상이 쉽게 타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다.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에서, 강문성(외, 2003) 한·중·일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제안을 보면 완전생산기준, 실질변형기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협상을 통해 3국이 모두 수용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되, 기본적으로는 세번변경의 원칙 아래 품목의 특성, 3국의 산업구조의 특성,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요공정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본 논문의 주장도 이와 같다.

앞의 분석을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은 국가의 산업구조·산업경쟁력과 큰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 문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는 오랫동안 양국 경제 구조의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 가공공업 등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반면에는 한국은 농수산품이 세계 시장에서 취약하고 과학기술이 많이 요한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양국이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협상할 때, 아마 농업, 가공공업에 대한 논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제1-14류 농수산업

2006년 말, 「중국 제2차 전국 농업 검사 주요 데이터 공보」를 보면, 전국의 농업 종사 인원은 34874만 명, 농업 기술 인원은 207만 명이였다. 다음 [표4-2]는 중국 주요 농업 생산물이 세계 순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분석을 보면 중국 농업은 세계적으로 앞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반면에 한국의 농업 경쟁력이 취약하고 한국의 민감 산업이다.

[표4-2] 중국 주요 농업 생산물의 세계 순위(2006년)

항목	1978년	1980년	1985년	1990년	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곡물	2	1	2	1	1	1	1	1
육류①	3	3	2	1	1	1	1	1
실면	3	2	1	1	1	1	1	1
콩	3	3	3	3	4	4	4	4
땅콩	2	2	2	2	1	1	1	1
유채씨	2	2	1	1	1	1	1	1
사탕수수	7	9	4	4	3	3	3	3
차	2	2	2	2	2	2	1	1
과일②	9	10	8	4	1	1	1	1

주:①1990년 이전에 육류 순위는 양, 소, 돼지 육류의 순위이다.

②과류를 포함하지 않다.

자료: 「국제 통계 데이터 2007(國際統計數據2007)」-중국주요 농업 생산물의 세계 순위 (中國農業主要產品產量居世界的位次) 인용

농수산 상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농수산업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제1-16류 농수산 상품에 대한 한국·칠레의 협정문에서는 세번 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조합하여 사용할 때도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 제1-16류 농수산 상품에 대해 협상할 때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이 한국에게 농수산 시장 완전 개방, 더 간단한 결정기준 체결함을 요구하면 현실적이며 타당한 접근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 발간한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

점」(남영숙 외, 2004)에서 “이미 WTO 다자간 협상에 의해서 농산물 시장이 상당부분 개방되어 있는 한국으로서 그 이상 과도하게 농산물 시장개방을 감내하면서 한·중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고 하고 언급하였다.

또한 중국도 민감 산업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이 일부 농산품에 대해 양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농업 분야에서 중국 민감 산업으로 양보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다시 정리하면, 본 논문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쉽게 만족할 수 있는 농산품에 대해 양보하는 것을 제안한다. 제2류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예로 보면, 「중·칠레 FTA」과 「한·칠레 FTA」에서 0201쇠고기는 적용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다음 [표4-3]과 같다. 중국보다 「한국·칠레 FTA」 농수산업 원산지 결정기준이 더 엄격하다고 알 수 있다.

[표4-3] 0201 쇠고기 원산지 결정기준

	중국·칠레 FTA	한국·칠레 FTA
완전생산기준	중국 또는 칠레 영역 내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 부처 획득한 상품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실질적 변형기준	2단위	다른 2단위 세 번으로 부터 0201로의 변경, 단 제1류 로부터의 변경은 제외
불인정 공정기준	동물 도살	동물 도살

자료: 「중국·칠레 FTA」, 「한국·칠레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재정리

한국은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칠레 FTA」처럼 규정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2000-2006년의 소 생산량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의 소 농축산품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칠레 FTA」와 같은 원산지 규정을 만족시키기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즉, 중국은 제2류 0201 쇠고기(선선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에 대해 한국과 협상 시 “일방 또는 당사국 영역 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및 “다른 2단위 세 번으로 부터 0201로의 변경, 단 제1류 로부터의 변경은 제외”라는 한국 측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 (2) 제조업

중국 제조업의 증가 속도는 20년 동안이나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중국 제조업의 증가치가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980년에는 중국 제조업의 증가치가 세계 1.5%로 브라질(Brazil)의 50%였다. 그러나 1990년 중국 제조업은 브라질(Brazil)을 넘어서 개발도상국들의 1위에 등극하며 세계 2.7%를 차지하였다. 2000년, 중국 제조업의 증가치는 세계 7%를 차지하고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세계 4위가 되었다. 2006년에는 세계 제3위의 제조 국가가 되었다. 2007년에는 세계 2위로 올라섰다. 그 변화는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중국 제조업 성장률 세계 순위

년 도	세계의 비례(단위 %)	순위
1980년	1.5%	-
1990년	2.7%	8위
2000년	7%	4위
2006년	-	3위
2007년	13.2%	2위

자료: 「中國製造業增速連續二十年世界第一」(中華機械網, 2008년 제28권 제6기)와 「中國製造業有望躍居全球第一」(金融時報, 2008년8월11일)를 이용하여 저자 재정리

2001년 일본은 처음으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제시하였다. 그 후 싱가포르 총리도 “중국이 21세기의 세계 공장”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세계 가공공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그 이유는 중국 기존 문헌 「中國製造業從OEM到OBM模式

轉變研究」(張翠, 2008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문헌에서는 요즘 중국제조업은 거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모델이라고 제시하였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모델이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브랜드 우위와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기업에게 상품 생산을 위탁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리고 이런 대 기업은 자기 기업 상품의 디자인이나 품질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위탁할 기업에게 상품 디자인과 기술 설비를 제공한다. 이런 모델 하에 중국 제조업의 단점이 「中國製造業經濟創造能力的國際比較」(沈禁, 朱建鋒, 2008년)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중국 제조업의 비합리적인 분포가 발생한다. 이는 큰 지역 차이로써, 중국 제조업 대부분이 장강 삼각주(長江三角洲), 주하이 삼각주(珠海三角洲), 보하이 삼각주(渤海三角洲)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 3 지역의 제조업 총액이 다른 지역의 총합보다 현저히 높다.

둘째, 중국 제조업은 핵심기술과 유명한 브랜드가 없다. 그리고 노동생산율이 낮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글로벌기업이 없다. 요즘, 중국 제조업의 대부분 산업 기술은 외국 산업에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 중에는 대부분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첨단기술적인 산업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중국 제조업에서 세계 선진 수준이 될 수 있는 기업은 5%조차도 안 된다. 따라서 중국 시장은 선진 기술을 급하게 구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입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중국의 저수준, 기술함유량이 낮은 제조 생산품이 과잉 생산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제조업의 설비 제공·창조가 부족하다. 중국 제조업 경제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렴한 노동력이다. 그러나 이런 노동력은 중국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노동 원가가 높아지면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보다 더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국가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셋째, 중국 제조업이 국제 분업의 하위에 위치하고 있어 위탁 대기업보다 매우 적은 이익을 얻고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해 중국 제조업은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은 다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한 FTA 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중국의 제조업 조정, 제조업 경쟁력 제고, 민감 제조업 보호 등의 목적을 원칙으로 협상해야 한다.

가. 제84-85류 기계, 전자산품 과 제86-89류 교토수단에 관련된 산품

가-1. 기계 산업

일반 기계 산업 기술은 자본집약적 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산업과 달리 장기간에 걸친 고도의 설계 및 생산기술의 축적과 부품산업의 기술적 기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중 2국간 기술격차가 타 산업에 비해 큰 것이 특징이다. 다음 [표4-5]에는 중국 기계 산업의 특화구조 전망 및 경쟁력(한·중 간 비교)이다.

[표 4-5]를 살펴본 결과, 현 시점에서 한·중 일반 기계 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은 한국,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중국 기계 산업의 생산기술이 중하 단계에 처하고 공작기계, 건설 중장비 등은 아직 “외자 계 합작투자 생산” 단계에 있다. 중국보다 한국 기계 산업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수준과 더 가깝고 개별 기술 산업은 독자 모델을 생산할 수 있다.

[표 4-5] 중국과 한국의 특화구조 전망과 경쟁력

		기술수준별 특화			기술 경쟁력 수준	부가가치 사슬별 특화			외자 계 합작 투자 생산
		고기술	중고 기술	중하 기술		R&D	디자인	독자 모델 생산	
중국	전체		○	□	65			□○	
	공작기계		○	□	65		○	□	□○
	건설 중장비		○	□	80		○	□	□○
한국	전체		□○		80		□○		
	공작기계	○	○		85		○	□	
	건설 중장비	□○			90		○	□	

주:1)기술수준별 구분은 선진국을 최고수준<고기술>으로 하고, 기술경쟁력 수준은 선진국을 100으로 한 지수

2) □: 2005년, ○: 2010년

자료: 이 항구,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에 따른 한국 기계 산업의 대응전략」 인용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된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에서 “한국이 중국에 진입한 기계 산업을 살펴보면, 요즘 중국에 진입한 한국 기계 업종은 대표적인 중국내 조달-내수 판매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부품 및 소재 조달에 있어 현지화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현지 조달 비중이 91.1%나 된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7.7%, 제3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0.4%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지 조달 구조에 있어서는 협력사의 동반진출을 통한 현지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 내 조달의 84%가 중국내 한국계 기업, 특히 동반 진출한 협력사를 통해 조달되고 있으며, 중국기업에서의 조달 비중은 15.9%에 불과하다. 제품 판매에 있어서도 현지 내수 판매 비율이 91.1%에 달하고 있으며, 4.8%만이 한국으로 역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계 업종 기업의 수요에서는 역시 중국내 한국계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내수의 82%가 한국계 기업으로 납품되고 있으며, 이중 77%가 동반진출 수요자에게 납품되고 있다. 이외에 매출의 14% 정도가 중국 내 제3국계 외자기업으로 납품되고 있으며, 중국기업으로 납품되는 비중은 4%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에 진입한 한국 기업은 선진적인 기술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기업으로 많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한 양국 기계 산업 비교와 중국내 한국 기계 산업 현황을 보면, 앞으로 중국은 한국과 기계 산업에 관련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협상할 때, 부가가치 기준과 특정 공정기준을 조합하여 채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정밀계측기기를 예로 보면, 양 국 간의 경쟁관계에 있어 RCA지수를 이용하여 각국이 비교우위인 업종과 비교열위인 업종으로 구분하였다.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에서 2005년을 기준으로 RCA지수에 대한 연구 결과는, 한국과 중국의 정밀계측기기의 RCA(2005)지수가 각 1.52, 0.13임으로 중국의 정밀계측기기는 비교열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밀계측기기에 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그 핵심기술의 가공공정을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정하면 중국의 정밀계측기기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가-2. 전자산업

중·한 양국은 상호간의 경쟁우위제품을 중심으로 상호의존적 무역관계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한국의 중국 전자 수출입은 매년

증가추세이고, 2006년 수출은 254억 달러, 수입은 154억 달러, 무역수지 1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점차 시장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WTO 가입 해인 2001년 8.3%에서 2005년 18.4%로 대폭 확대되었다. 중국 전자산업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 중국은 조립가공분야의 강점을 발판으로 범용전자부품분야를 이미 장악했으며,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고부가가치산업 대열에 진입하고 있다. 중국은 광대한 내수시장과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무기로 해외기업을 유치하여 세계의 공장화를 달성했다. 그러나 해외 시장의에 대한 높은 의존도, 브랜드인지 부족, 지적재산권 보호 부족 등이 중국 전자산업의 단점이다.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에 따른 한국 전자산업의 대응전략」(주대영, 2007)의 결과를 보면 한국이 세계 4위의 전자 생산국으로 디지털TV, 휴대폰 등 세계적 기술경쟁력 갖추어 왔다. 그러나 한국의 노트북PC 부문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중국 전자산업의 장단점

장점	약점
거대 국내시장 정부의 공격적 지원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지식인의 귀국자 급증 광학기술 우위확보 SW기술의 잠재력 세계의 공장화 지속 글로벌 화교네트워크	IT기반 저조 경험있는 고급인력 부족 브랜드인지 부족 해외기업 의존적 성장 지적재산권 보호 모호 유통채널 미비 조립생산의 저부가가치

자료: 주 대영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에 따른 한국 전자산업의 대응전략」 인용

중·한 양국의 전자 산업을 비교하면, 한국 가전산업의 경쟁력은 대체로 일본과 중국의 중간 수준이고 생산역량 이외의 설계기술, 제품개발력, 품질, 브랜드 등 여러 방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생산역량에서 최고 경쟁력 확보, 타

요소들도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다음 표는 중·한 양국 전자 산업을 비교하는 표이다.

[표 4-7] 중·한 양국 전자 산업 비교

국가	설계기술	제품 개발력	생산역량	품질	브랜드
한국	100	100	100	100	100
중국	80	80	120	80	80

자료:주대영,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에 따른 한국 전자산업의 대응전략」 인용하여 재정리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양평섭 등, 2007년)에서 한국의 전자산업이 중국 국내 매출·매입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 전기전자 업종 기업들은 중간재 조달에 있어 중국 현지 매입 비중이 45%,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37.8%, 제3국에서의 수입이 17.2%를 차지하였다. 또한 제품의 판매에서는 제3국으로의 수출이 52.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으로의 수출이 29.7%, 중국 현지 내수 판매 비중은 17.7%로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완제품 기업의 경우 동반 진출한 기업에서의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지 매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간단한 조립공정을 한 후 다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수출 한다

위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중국의 대부분 전자 산업은 기술수준이 한국보다 낮고 경쟁열위에 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 산업이 중국에게 선진기술을 가져오지만 중국 전자 산업의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중·한 양국은 앞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협상하면, 전자 산업의 설계기술, 제품개발력, 품질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이나 공정을 보완기준으로 정하면 좋을 것이다.

### 가-3. 교통수단과 관련 산업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를 대표산업으로 분석하겠다. 중·한 양국 간의 보완 및 경합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특정 업종에서 한·중 간 상호보완적인지 경쟁적인지를 기준으로 양국의 민감 품목을 찾을 수 있다. 해당 업종에서 한·중 간 경합적인지 비경합적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수출 경합도 지수(ESI)를 이용하는데 ESI가 0.5 이상인 경우 경합적인 업종으로 구분하고, 0.5 이하인 경우 비 경합적인 업종

으로 구분하였다.

해당 업종에서 한·중 간 보완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 내 무역 지수(IIT)를 이용하여 IIT가 0.3 이상(한·중 간 제조업 평균치인)인 경우 산업 내 무역으로, 0.3 미만인 경우 일방적 무역(one way trade)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양국간 경쟁관계에 있어 RCA지수를 이용하여 각국이 비교우위인 업종과 비교열위인 업종으로 구분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RCA지수가 1이상인 경우 비교우위 업종으로, 1미만인 경우 비교열위 업종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에는 한·중 간 자동차 산업의 경쟁 및 보완 관련지수이다. 이 지수를 통해 중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산업에서 보호요구 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4-8] 중·한 간 자동차 산업의 경쟁 및 보완 관련지수<sup>86)</sup>

업종	ESI(2006)	TSI(2006)		RCA(2005)		IIT(2006)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자동차	0.40	-0.13	0.79	0.13	1.52	0.27

자료: 한국 무역협회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자동차 생산량에 보면, 2007년 세계자동차공업협회(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s Constructeurs d'Automobiles, OICA)의 연구에 의하여 각국 자동차 생산량을 살펴본 결과, 중국의 자동차생산량은 전년대비 22.0% 증가한 889.24만대로, 세계3위이다. 중국 국가 통계국의 발표된 「工業主要產品產量及增長速度(2008년7월)」 보고서에서 2008년7월의 중국 자동차 생산량은 3595.19 만대로 기록하였다.

중국 자동차 수출입에 따르면, 2006년 자동차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이며, 수출 비중은 0.4%수준이다. 중국 자동차산업의 급속한 성장보다 자동차 수출입은 저조하다고 알 수 있다. 요즘 중국은 한국의 최대 부품 수출 대상국이자 4위의 수입대상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3위 부품 수출입 대상국이다. 한국은 중국의 4위 완성차 수입대상국 (독일, 일본, 미국 순)이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 수출의 대부분은 외자기업의 독자적인 수출이거나 외자기

86) 양평섭·이장규·박현정·여지나·배승빈·조연준,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7년, pp100-103

업을 대신해서 중국기업이 조립생산한 자동차의 수출이다. 중국 측이 핵심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산과 수출의 이득은 대부분 중국 측에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수출이 급증했다 해도 중국의 실제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특히 중국 내수 시장은 이미 여러 합자기업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중국기업은 해외진출을 노릴 수밖에 없다. 중국 자동차 수출은 여전히 저부가가치 상품을 위주로 하고 있다. 현재 중국기업은 해외시장 진출 전략이 부족하고, 자금 및 기술 측면에서의 경쟁력이나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소비자에게 주로 저렴한 가격으로 어필(appeal)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시비교우위지수(RCA<sup>87</sup>)와 무역특화지수<sup>88</sup>)를 이용하여 중국과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보면, 2005년 중·한 간 자동차 산업의 RCA는 한국이 1.52, 중국 0.13이다. 따라서 중국에 비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동차부품산업에서, 무역특화지수가 2006년 한국은 0.575에 해당하는 수출특화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0.010에 해당하는 수치로 분석된다.

[표4-9] 중·한 자동차부품의 수출경쟁력<sup>89</sup>)

(단위: 백만 달러)

	대세계 수출		대세계 수입		대세계 무역수지		대세계 무역특화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2002	1839	2288	2981	1537	-1142	751	-0.237	0.196
2003	2415	3694	6181	1772	-3766	1922	-0.438	0.352
2004	4403	5271	7305	1965	-2902	3305	-0.248	0.468
2005	6567	7719	6713	2197	-146	5522	-0.011	0.557
2006	8849	9458	9029	2548	-180	6906	-0.010	0.575

자료: UN COMtrade database 에 의거 산출

87) 현시비교우위지수RCA란 세계 전체 수출시장에서 특정상품 서비스 포함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정국의 수출에서 동 상품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사이의 비율로 특정 상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데 널리 쓰이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된다.

88) 무역특화지수는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수가 0인 경우 비교우위는 중간정도이며 1이면 완전 수출특화상태를 말한다. 즉, 수입은 전혀 하지 않고 수출만 한다는 뜻이다. 또 -1이면 완전 수입특화 상태이다. 수출물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만 한다는 뜻이다.

89) 趙秋霞, 「韓·中FTA 推進을 통한 中國自動車産業의 發展戰略에 關한研究」, 2008년7월, p33

「韓·中FTA 推進을 통한 中國自動車産業의 發展戰略에 關한研究」(趙秋霞, 2008년)에서 중·한 자동차부품산업의 품목별 무역특화지수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품목에서 중국의 대 세계 무역특화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브레이크라이닝, 로드 휠 등에서는 중국이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수출특화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클러치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한국은 많은 품목이 수출특화품목이었지만 범퍼, 안전벨트, 브레이크라이닝, 기타제동장치, 변속기 등은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여 경쟁력이 취약하다 할 수 있다.

[표4-10] 한·중 자동차부품산업의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비교

	중국의 대 세계 무역 특화지수	한국의 대 세계 무역 특화지수
범퍼와 부품	-0.554	-0.350
안전벨트	-0.132	-0.906
기타 차체부품	-0.763	-0.032
브레이크라이닝	0.643	-0.993
변속기	-0.934	0.881
구동차 축	-0.866	0.487
비구동차 축	-0.120	0.920
로드 휠	0.728	0.711
업소버	-0.264	0.316
방열기	0.498	0.785
소음기와 배기관	-0.417	0.924
클러치와 부분품	0.256	0.391
핸들,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	-0.866	0.314
기타 부품	-0.478	0.785
기타 제동장치	-0.162	-0.032

자료: 「韓·中FTA 推進을 통한 中國自動車産業의 發展戰略에 關한研究」의 [표2-13]인용  
자동차부품은 HS 8708을 기준으로 한 것임. 2006년. UN Comtrade database에 의거 산출.

「대외경제전문가 중국경제연구회 회의결과」(이인구, 2006년)에서 “현재 중국 국내업체의 기술경쟁력은 한국과 약 8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나 2010년에는 4년으로 감소하고 2015년에는 격차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 자동차산업의 기술경쟁력은 각각 일본의 85%, 65%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다”고 논술했다.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李昌在, 2005년)에서 중국과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에 대해 비교하여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은 중국보다 설계 기술, 신제품 개발기술, 신기술 응용기술, 생산기술 방면에서 경쟁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결론을 냈다.

위 중국의 자동차산업 생산, 수출, 중·한 자동차 기술 비교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보다 중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칠레 협정과 한국·칠레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 한국은 섬유 산업과 농수산업보다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중국보다 보다 더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채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한 자동차 산업현황과 이 부분에 관련된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를 통한, 만약 한·중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다면 세번변경기준을 위주로, 부가가치기준과 특정가공기준을 보조기준으로 채택하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단일 원산지 결정기준보다 우선 조합원산지 결정기준을 채택하면 더 좋을 것이다.

「韓·中FTA 推進을 통한 中國自動車産業의 發展戰略에 關한研究」,(趙秋霞 2008년)에서 중국과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현재 한국 업체가 중국시장으로 수출주력 상품인 고급 승용차 중에서 중형, 보통, 미형 승용차 등은 현재 중국의 경쟁력이 약한 부문이어서 중국시장에서는 당분간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며, 승용차디젤엔지, 승용차용AT, 상용차AT, 자동차 Electronics, 기어 자동차합성수지 등은 중국에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라고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국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부품에 대해 제조 기술을 판정기준으로 정하며 중국의 이 분야의 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중·한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다면 한·중 간 관세 인하에 따라 제3자 국가 기업이 중국에서 간단히 가공하고 한국으로 수출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협상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국의 우회무역을 예방해야 하지만 너무 엄격한 원산지 결정이 무역전환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제3국에게 높은 관세를 부여하지 않는다. 또 제3국으로 선진기술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정한다. 중국내 외자 계 기업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외자 계 기업은 한국 기업 간 품질과 기술격차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협정 시, 중국에서 아직 발전 단계에 있는 생산품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한다.

나. 제50-63류 섬유(방직)산업

섬유산업은 소득수준 향상과 라이프스타일 등의 변화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섬유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산업용 섬유의 개발로 새로운 시장창출이 가능한 잠재산업이다.

현재 한국의 섬유산업은 그 위상이 점차 위축되고 있다. 반면 중국의 섬유산업은 개혁·개방 이후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면사, 면직물, 견직물, 생사, 화학섬유, 의류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생산대국이다.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에 따른 한국 소재산업의 대응전략」(김주한, 2007년)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섬유산업은 성숙기 중후반, 제품차별화단계에 처해지고 있으며, 중국은 아직 성장기, 공정간 분업단계에 있다고 알 수 있다.

[표 4-11] 중국과 한국 양국의 섬유산업의 발전 단계

중국	한국
성장기, 공정간 분업단계	성숙기 중후반, 제품차별화단계
화학섬유, 화섬 직물: 성장기 초중반 천연섬유직물, 천연 섬유: 성장기후반을 지나 성숙기 초반	직물: 성숙기 후반 내지 쇠퇴기 초반 화학섬유: 성숙기 초중반 산업용 섬유, 기능성 염색가공, 패션 디자인: 성장기 초반

자료: 김주한,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에 따른 한국 소재산업의 대응전략」 자료를 인용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중국은 한국보다 20% 정도 낮은 수준이다([표 4-12]<sup>90)</sup> 중국의 화학섬유, 염색 가공분야에는 33~38% 정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동시에 의류, 면사/직물 분야에는 13~19% 정도의 기술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표 4-12] 중·한 기술수준 비교

	염색 가공	화학섬유	화섬 장섬유직물	면직물	면사	의류
한국	80	75	85	80	80	80
중국	50	50	65	65	65	70

주: 선진국 최고기술=100

자료 : 김 주한,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에 따른 한국 소재산업의 대응전략」 자료를 인용

한국·칠레 협정에서는 제50-63류 원산지 결정기준이 중국·칠레 협정에 있는 것보다 복잡한데 특정 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을 조합하여 같이 적용한다.

중·한 양국의 섬유산업 비교를 통해, 중국은 한국과 이 부문에 대해 협상할 때, 부가가치기준과 특정가공 기준이 조합하는 방식으로 정하면 더 좋다. 예를 들면, 성장기 단계에 처하는 화학섬유, 화섬 직물 산업은 부가가치기준과 특정 공정기준을 조합하여 채택한다. 즉, 생산과정에서 원산지재료의 함유율이 일정한 수준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특정기술도 갖춰야 비로소 원산지를 인정해 준다. 반면에는 성숙기 초기에 위치해 있는 천연 섬유를 비롯한 산업은 원활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 브랜드 의식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패션디자인을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또한 중국 섬유 산업중 제3국가 산업은 다소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만약 한·중 양국의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더 많은 제3자 방직 산업이 중국에 진출하고 한·중 양국의 특혜를 받기 위해 중국에서 간단한 가공을 하고 한국으로 수출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할 때, 제3자의 우회무역을 예방해야 한다.

90) 김주한,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에 따른 한국 소재산업의 대응전략」, 2007.5.16, P37

마지막으로, 중·한 FTA 체결 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원산지 결정기준의 실질적 원산지결정기준의 예상 FRAMEWORK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는 세번변경의 원칙 아래 품목의 특성, 2국의 산업구조의 특성,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요공정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표4-13]실질적 원산지결정기준의 틀 (FRAMEWORK)

분류	산 업	FRAMEWORK
1-14류	농수산업	세번변경기준(2단위)
84, 85류	기계와 전자산품	부가가치기준과 특정 공정기준 조합하여 채택
86-89류	교통수단에 관련된 산품	세번변경기준을 위주, 부가가치기준, 특정가공기준을 보완기준으로 채택
50-63류	섬유(방직)제품	부가가치기준과 특정 공정기준 조합

## 제Ⅴ장 결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자간 무역 협정과 동시에 지역무역협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정부도 FTA에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2003년 이래 중국정부는 이미 4개국과 FTA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의 무역규모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아시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직 유럽처럼 경제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중·한 양국의 정부·학계 등 여러 방면에서는 중·한 FTA 가능성에 대해 다방면으로 연구·토론 중이다.

현시점에 있어서 중국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세계 원산지 규정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중국과 한국의 FTA 체결에 대한 연구는 중·한 양국의 경제 구조 및 체결 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논문처럼 원산지 결정기준에 입각한 중·한 기 체결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한국 양국의 각 체결된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특히 「중·칠레 FTA협정」과 「한·칠레 FTA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있어 유사점, 또는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중·한 FTA 협정 체결 시 중국과 한국 양국이 상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win-win”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의 FRAMEWORK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는 먼저 FTA의 개념, 종류, 결정기준, 경제 기능 등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이어서 중국과 한국의 각 기 체결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과 한국이 선호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술하였다. 또한 「중·칠레 FTA협정」과 「한·칠레 FTA협정」 양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중·한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바람직한 체결 방향과 합의 점을 제시하였다.

중·한 양국에 있어서 산업, 무역 구조를 보면 중·한 양국 경제는 경쟁성과 보완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한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양국이 “win-win” 효과를 얻은 것을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농수산 분야에는 중국이 일부분 양보를 통해 중국 산업에 유리한 결정기준을 채택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국내 산업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국 산업의 구조 조정에 유리한 결정기준을 채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한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경제발전과 경제 구조 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논문에서는 농업, 기계, 전자, 교통(자동차), 섬유 부문을 중심으로 5 개 부문의 경제 및 무역 상황을 고찰, 그리고 그것들이 중·칠레, 한·칠레 무역협정에서 대응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비교를 통해 앞으로 중·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이 마련될 때 중국은 한국과 어떤 원산지 결정기준을 채택하여야 비로써 중국의 경제발전과 구조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도모하였다.

그 외에, 중국 국내에서 제3국의 투자가 많아 중·한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우회무역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떤 제3국 기업은 한국과 비슷한 생산 기술이나 세계에서 제일 선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한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우회무역을 예방하는 동시에 선진기술을 도입하기를 추진하는 기능도 가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부족하여 보충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 확인절차를 포함하지만 본 논문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서만 논술함으로써 연구의 범위가 포괄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중국과 한국의 각 기 체결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중국과 한국 양국의 원산지 결정기준 선호차이를 도모하였으며 향후 중국과 한국 양국의 FTA 체결 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함의 점을 제시하였는바, 본 논문의 한국과 중국 양국 FTA 원산지 결정기준이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參 考 文 獻

### 1. 한국 문헌

- 辛東圭,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ules of Origin in the Korea's Free Trade Agreement)」, 2006년 8월.
- 최홍석·지종철·최양식,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 무역협회, 2007년 8월.
- 도충구, 「국제 원산지 규정의 적용범위와 그 효과」, 2000년.
- 尹姬淑, 「한·중·일 FTA 추진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in Promoting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2004년 10월.
- 馬一男, 「FTA규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2005년 6월.
- 정인교외3명, 「우리나라 FTA 원산지(ROO) 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년.
- 김경원,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2004년 12월.
- 최홍석, 「한·칠레 FTA 시행과 관세행정의 역할」, 관세와 무역, 2004년 4월
- 최홍석·류윌택 「원산지 이론과 실무」, 2004년.
- 조미진·여지나·김민성,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2008년.
- 최장우, 「한-FTA 체결국간 원산지제도 비교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2007년 12월
- 卞蓮花, 「韓·中 FTA 締結 妥當性과 推進方向에 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2006년 12월
- 양평섭·이장규·박현정·여지나·배승빈·조현준,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년.
- 주대영,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에 따른 한국 전자산업의 대응전략」, 2007년 5월.
- 고준성·노재봉·박변순 등, 「글로벌 시대의 FTA 전략」, 2005년.
- 김주한,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에 따른 한국 소재산업의 대응전략」, 2007년 5월.

이원복·강두용, 「한국 제조업의 기술수준 및 개발 동향」, 2008년.

이항구,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에 따른 한국 기계산업의 대응전략」, 2007년 5월.

李昌在,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2005년.

남영숙 외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년12월.

尹昌仁, 「한 중 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년.

양평섭·이장규·박현정·여지나·배승빈·조연준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  
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년.

趙秋霞, 「韓·中FTA 推進을 통한 中國自動車産業의 發展戰略에 關한研究」, 2008년 7월.

이인구, 「대외경제전문가 중국경제연구회 회의결과」, 2006년10월23일.  
「중국 자동차 수출의 급증과 문제점」,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제07-10호, 2007년 5월 11일.

「중국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 육성 전략과 전망」, 「한중경제포럼」, 제08-17호, 2008년8  
월19일.

진국경제인연합회, 「韓中日3국의 FTA 추진 현황과시사점」, 제66호, 2007년5월  
30일.

KOTRA, 「FTA 원산지규정 활용 가이드」, KOTRA 통상전략팀, 2007년 9월

한국 관세청, 「원산지 제도」, 2004년,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 2. 중국 문헌

陈泓, 「建立中日韩自由贸易区的制度框架分析与路径选择」, 2005年.

许海峰, 「国际贸易中原产地规则比较研究」, 2005년.

梁静, 「我国原产地规则存在的问题与对策」, 2006년10월.

何金辉, 「论我国原产地规则的不足和完善」, 吉林大学, 2008년.

张琳, 「原产地规则探析—兼评我国新<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 政治与法律, 2006년,  
第1期

王雪平, 「我国FTA原产地规则浅析」, 2008년 1월.

张洪亮, 「浅析中日韩自由贸易区构想」, 2006년.

金兑炫, 「中韩自由贸易区发展战略研究」, 2007년8월, 吉林大学

林剑文, 「中国-东盟自由贸易对中国经济影响的一般均衡分析」, 2005년, 福建大学

周玲玲, 「2007年中国汽车产量为世界第三」, 《财经网》

沈禁, 朱建锋, 「中国制造业经济创造能力的国际比较」, 2008년

「中国制造业增速连续二十年世界第一」, 中华机械网, 2008년, 第28卷第6期

柳毅伟 「我国制造业结构生计的若干问题研究」, 2005년12월

「中国制造业有望跃居全球第一」 「金融时报」, 2008년8월11일

沈禁, 朱建锋, 「中国制造业经济创造能力的国际比较」, 2008년

张翠, 「中国制造业从OEM到OBM模式转变研究」, 2008년 6월 18일

周皓月, 「浅析中国制造业现状」, 2008년8월

王援, 「中日韩贸易合作的前景探析」, 2004년

WTO,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Article, 1, 1994.

「中国农业主要产品产量居世界的位次」, 「国际统计数据」, 2007년

<http://www.stats.gov.cn/tjsj/qtsj/gjsj/2007/>

「2007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2008年2月28日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智利共和国政府自由贸易协定」

「中国自由贸易区建设进展情况」, 中国自由贸易服务网,

[http://fta.mofcom.gov.cn/article/aboutfta/cftagaikuang/200809/30\\_1.html](http://fta.mofcom.gov.cn/article/aboutfta/cftagaikuang/200809/30_1.html)

<http://fta.mofcom.gov.cn/yatai/xieyijianjie.shtml>

「国别贸易报告」韩国 2008年 第一期 国别数据网

<http://countryreport.mofcom.gov.cn/record/qikan.asp?id=526>

「国别贸易报告」韩国 2008年 第四期 国别数据网

<http://countryreport.mofcom.gov.cn/record/qikan.asp?id=871>

「中华人民共和国政府关于领海的声明(1958年9月4日)」,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门户网站, [http://www.gov.cn/test/2006-02/28/content\\_213287.htm](http://www.gov.cn/test/2006-02/28/content_213287.htm)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lection criteria of Rules of Origin in the FTA

–Focused on China–Chile FTA, Korea–Chile FTA

Yanxia Zhao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ONG–WAN LEE

Nowadays, the WTO–led trade liberalization process has come into the consultation period, which is a slow–moving process. However, through the signing of Free Trade Agreements(FTA) between counties in the world marketplace, globalization continues to deepen. In the past, an FTA was between two countries only and governed the trade of goods only. More recently, Free Trade Agreements have evolved to being between whole continents or groups of counties; and, in addition to governing the trade of goods, the exchange of services, investments and other things have come to be included in the agreements.

As of the present, China has signed agreements with Chile, ASEAN, EFTA, Pakistan, Hong Kong, Macao and other countries and regions. And agreements with Austria, Singapore, and other countries and regions.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igned agreements with ASEAN, EFTA, Singapore, Chile,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are in consulta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igned agreements with ASEAN, EFTA, Singapore, Chile,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In 2008 agreements

with the EU and 41 other countries are in consultation. As neighbors, China and South Korea are also actively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a South Korea–China FTA.

The main content of FTA negotiations is the origin and the elimination of tariffs. In particular, the rules of origin is the pillar of an FTA agreement. Different origin criteria bring about different economic effects. So it is important to negotiate an FTA with rules of origin that benefit the interests of the country. The rules of origin consist of selection criteria and verification procedures. The thesis of the paper being reviewed is that, compared to the overall topic of rules of origin, the selection criteria are more significant. Therefore, the greatest research effort needs to be directed to this area. It is hoped that the paper will be of help in a future China–South Korea FTA negotiation process.

Literature and data us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1) the theory of the origin, 2) signed FTA agreements involving China or South Korea, 3) other studies of FTA agreements involving China or South Korea, 4) statistics and data from China and South Korea national government agencies, associations, etc.

In this paper, research method are suggested for the study of theory, comparative data and data analysis. This paper looks at the–country–of–origin theory, how various bases for determining it would affect China and Korea. China–Chile and Korea–Chile FTA's are analyzed and compared, and recommendations for a future China–Korea FTA are presented.

The paper is organized into five chapters. Chapter 1 presents the research method and purpose. Chapter 2 deals with country–of–origin theory, starting with the basic concept, then looking at various bases for determining it and the economic effects of the various bases, leading to the bases preferred by China and Korea. Chapter 3 looks at the China–Chile

FTA, and the Korea–Chile FTA, comparing them and examining the differences. Chapter 4 is mainly devoted to offering inspiration and recommendations for a future China–South Korea FTA, focusing on the country–of–origin rules. From an overall standpoint, these rules would need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two countries, taking into account their different and industry specific. They must be able to prevent use by third countries resulting in "indirect trade". Finally, the rules must be simple and clear in order to reduce the bureaucratic burden and to maximiz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Chapter 5 is concluding remarks.

KeyWord: FTA, the Rules of Origin, the selection criteria of Rules of Origin

